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2020

 경 기 도

<제목 차례>

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개요	3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3
가. 법적근거	3
나. 수립배경 및 목적	3
2. 계획의 범위 및 추진경위	4
가. 계획의 범위	4
나. 추진경위	4
II. 여건 및 전망	9
1. 경기도 및 시·군별 교통약자 통계 현황	9
가. 교통약자 구분 기준	9
나. 경기도 교통약자 통계	10
다. 경기도 교통사고 현황 분석	17
2. 경기도 교통약자 전망	20
III. 관련계획 검토	23
1.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 2016.12)	23
가. 계획의 개요	23
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24
2.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국토교통부, 2019.12)	27
가.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27
나.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확대	28
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8)	28
4.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검토	30
가. 이동편의시설 현황조사	30
나.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결과	37
다. 연차별 투자계획	46

IV. 제1차 지원계획 추진성과 분석	51
1. 제1차 지원계획의 내용	51
가. 계획의 개요	51
나. 세부 지원계획	51
2.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53
가. 평가기준	53
나. 평가결과 종합비교	58
다. 지원계획 성과 분석	64
V. 제2차 지원계획	69
1.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69
가. 기본방향	69
나. 목표설정	69
2. 중점 추진과제	70
가. 특별교통수단 확충	70
나.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개선	74
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표준화	81
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 및 바우처택시 등) 확대	82
마. 저상버스 확충	89
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고도화	92
사.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96
아. 기타	98
VI. 투자비용산출	105
1. 소요비용산출	105
가. 개요	105
나. 소요비용산출	105
다. 연차별 투자계획	109
2. 자원조달방안	110
가. 중앙정부의 자원조달방안	110
나. 경기도 및 시·군 자원조달방안	110

<표 차례>

<표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법적근거	5
<표 2-1> 교통약자 기준	9
<표 2-2> 경기도 교통약자 현황	10
<표 2-3> 장애유형별 등록현황	11
<표 2-4> 장애정도별 등록현황	12
<표 2-5> 경기도 고령자 현황	13
<표 2-6> 경기도 임산부 현황	14
<표 2-7> 경기도 어린이 현황	15
<표 2-8> 경기도 영유아동반자 현황	16
<표 2-9> 경기도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18
<표 2-10> 경기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19
<표 2-11> 장래 경기도 교통약자 유형별 추계 인구	20
<표 3-1> 부문별 설치율 목표 및 개선·확충사항	25
<표 3-2> 휠체어 이용차량/터미널 개선 계획	28
<표 3-3> 시·군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요	30
<표 3-4> 시·군별 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31
<표 3-5> 시·군별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32
<표 3-6> 시·군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33
<표 3-7> 시·군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34
<표 3-8> 시·군별 도시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35
<표 3-9> 시·군별 도로(보도)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36
<표 3-10> 시·군별 선박 및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37
<표 3-11> 시·군별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자수	41
<표 3-12> 시·군별 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교통약자)	42
<표 3-13> 시·군별 우선 개선순위 조사결과	45
<표 3-14> 시·군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종합	46
<표 4-1> 버스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53
<표 4-2>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54

<표 4-3>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54
<표 4-4>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55
<표 4-5> 도시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56
<표 4-6> 도로(보도)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57
<표 4-7> 시·군별 버스 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58
<표 4-8> 시·군별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59
<표 4-9> 시·군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60
<표 4-10> 시·군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61
<표 4-11> 시·군별 도시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62
<표 4-12> 시·군별 도로(보도)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63
<표 4-13>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수준 정의	64
<표 4-14>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부문별 추진성과	65
<표 5-1>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70
<표 5-2>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계획	71
<표 5-3>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전망(2020~2024년)	72
<표 5-4>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관련 법령	73
<표 5-5> 광역지자체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운영현황	75
<표 5-6>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77
<표 5-7>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운행요금 현황	78
<표 5-8> 특별교통수단 운행기준	81
<표 5-9>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지원 관련 법령	82
<표 5-10>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비교	83
<표 5-11> 7개 광역시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운행횟수 분석	84
<표 5-12>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2019년)	86
<표 5-13> 시·군별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2019년)	87
<표 5-14>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외 서비스 운영현황 및 도입계획	88
<표 5-15> 장래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 예상	90
<표 5-16> 시·군별 저상버스 현황 및 증차·대폐차 계획(2020~2024년)	91
<표 5-17>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업무현황	92
<표 5-18>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실적현황	93
<표 5-19>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관련 법령	94
<표 5-20> 인식제고 홍보방안	96
<표 5-21> 교육방안	97

<표 5-22> 우선면허 부여 기준	101
<표 6-1>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 소요비용	105
<표 6-2>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용(도비)	106
<표 6-3> 저상버스 도입 소요비용	107
<표 6-4> 홍보 및 교육지원 소요비용	107
<표 6-5>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 소요비용(도비)	108
<표 6-6> 연차별 투자계획	109

<그림 차례>

<그림 2-1> 경기도 교통약자 추이(2013~2018년)	10
<그림 2-2> 경기도 장애정도별 등록인구 추이(2013~2018년)	12
<그림 2-3> 경기도 고령자 추이(2013~2018년)	13
<그림 2-4> 경기도 임산부 추이(2013~2018년)	14
<그림 2-5> 경기도 어린이 추이(2013~2018년)	15
<그림 2-6> 경기도 영유아동반자 추이(2013~2018년)	16
<그림 2-7> 경기도 고령자 교통사고 추이(2013~2018년)	18
<그림 2-8> 경기도 어린이 교통사고 추이(2013~2018년)	19
<그림 3-1>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 개선안	25
<그림 3-2> 등급제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	27
<그림 3-3> 정책비전도	29
<그림 3-4> 통행목적 조사결과	38
<그림 3-5> 외출빈도 조사결과	39
<그림 3-6> 외출시 이용 교통수단 조사결과	39
<그림 3-7> 이동편의시설별 만족도 조사결과	40
<그림 5-1> 기본방향 설정	69
<그림 5-2> 목표설정	69
<그림 5-3> 특별교통수단 이용 광역접수시 연계방법	74
<그림 5-4>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요금 비교	79
<그림 5-5>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 산정 방법론	89
<그림 5-6>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개선안 참고	95
<그림 5-7>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 비교	99
<그림 5-8> 휠체어 이용자 여행가이드 사이트 참고	102

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 2. 계획의 범위 및 추진경위**

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

가. 법적근거

-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

나. 수립배경 및 목적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경기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 증진 도모

2 계획의 범위 및 추진경위

가.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전역(31개 시·군)으로 설정

- 시간적 범위
 - 5개년(2020~2024년)
 - 자료분석의 기준년도 : 2018년 (일부 자료는 2019년까지 현행화)

- 내용적 범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31개 시·군을 위한 중점 지원계획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나.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 신설('12. 6. 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2 신설('12.11.27.)
- 「제1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14.2.)

<표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법적근거

구 분	내 용
<p>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p>	<p>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p> <p>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p>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p>	<p>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p> <p>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p>

II. 여건 및 전망

1. 경기도 및 시·군별 교통약자 통계 현황
2. 경기도 교통약자 전망

II. 여건 및 전망

1 경기도 및 시·군별 교통약자 통계 현황

가. 교통약자 구분 기준

- 교통약자는 상위계획인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 2016.12)」의 교통약자 기준을 준용
 - 매년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의 영유아(0~5세)와 어린이(6~12세) 기준과는 상이
 - *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 제2조1항」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 어린이 : 「도로교통법 제2조23항」 만13세 미만인 사람

<표 2-1> 교통약자 기준

구 분	내 용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로 구성
장애인	- 장애 정도별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
고령자	- 65세 이상 인구
임산부	- 해당연도 이듬해 출생아 인구 또는 이듬해 '0세' 인구로 추정 (출생 인구 통계 없는 시·군의 경우)
어린이	- 5~9세 인구
영유아를 동반한자	- 0~4세(영유아) 인구로 추정

주)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으로 정의되나, 통계적 추출이 어려워 이듬해 출생아수 또는 '0세' 인구로 같음

나. 경기도 교통약자 통계

1. 경기도 교통약자 인구 현황

□ 교통약자 중 고령자 증가세 뚜렷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수는 감소세(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반영)

<표 2-2> 경기도 교통약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경기도 인구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소계	구성비	소계	구성비	소계	구성비	소계	구성비	소계	구성비	소계	구성비
2013년	12,234,630	2,871,230	23.5	314,832	11.0	1,195,523	41.6	109,299	3.8	633,737	22.1	617,839	21.5
2014년	12,357,830	2,920,908	23.6	311,135	10.7	1,254,445	42.9	111,355	3.8	629,231	21.5	614,742	21.0
2015년	12,522,606	2,983,698	23.8	309,483	10.4	1,318,882	44.2	104,099	3.5	642,218	21.5	609,016	20.4
2016년	12,716,780	3,028,212	23.8	310,261	10.2	1,374,475	45.4	92,366	3.1	653,028	21.6	598,082	19.8
2017년	12,873,895	3,089,186	24.0	307,315	9.9	1,467,835	47.5	87,536	2.8	656,397	21.2	570,103	18.5
2018년	13,077,153	3,156,463	24.1	307,270	9.7	1,551,801	49.2	87,536	2.8	656,105	20.8	553,751	17.5

주1)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주2) 장애인수는 전체 장애인 등록인원에서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수 제외

주3) 2018년 임산부는 2017년과 동일(2019년 '0세' 인구 통계청 미발표)

주4) 영유아동반자는 '0~4세' 인구 적용



<그림 2-1> 경기도 교통약자 추이(2013~2018년)

2. 장애인 등록 현황

- 2013~2018년 장애인 등록 연평균증가율은 전국 0.7%, 경기도 1.6%로서 전국 대비 경기도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편
 -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약 90% 차지

<표 2-3> 장애유형별 등록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율
경 기 도	합계	506,464	508,330	512,882	522,437	533,259	547,386	1.6%
	지체	270,229	268,930	268,668	268,816	268,832	268,731	-0.1%
	시각	50,087	50,397	50,868	51,482	52,038	52,988	1.1%
	청각	47,438	47,197	47,169	51,459	56,322	64,102	6.2%
	언어	3,533	3,642	3,772	3,995	4,299	4,517	5.0%
	지적	35,331	36,708	38,203	39,742	41,289	42,933	4.0%
	뇌병변	52,020	51,925	52,333	52,693	53,728	54,606	1.0%
	자폐성	4,450	4,868	5,360	5,920	6,403	7,037	9.6%
	정신	16,896	17,258	17,788	18,215	18,496	19,016	2.4%
	신장	15,161	16,138	17,285	18,478	19,807	21,070	6.8%
	심장	1,561	1,479	1,352	1,293	1,292	1,302	-3.6%
	호흡기	2,584	2,454	2,423	2,403	2,447	2,506	-0.6%
	간	2,319	2,430	2,601	2,796	2,986	3,153	6.3%
	안면	576	576	581	598	615	626	1.7%
	장루.요루	2,863	2,948	3,078	3,191	3,306	3,389	3.4%
간질	1,416	1,380	1,401	1,356	1,399	1,410	-0.1%	
전 국	합계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2,545,637	2,585,876	0.7%
	지체	1,309,285	1,295,608	1,281,497	1,267,174	1,254,130	1,238,532	-1.1%
	시각	253,095	252,825	252,874	252,794	252,632	252,957	0.0%
	청각	255,399	252,779	250,334	271,843	302,003	342,582	6.0%
	언어	17,830	18,275	18,813	19,409	20,321	20,744	3.1%
	지적	178,866	184,355	189,752	195,283	200,903	206,917	3.0%
	뇌병변	253,493	251,543	250,862	250,456	252,819	253,083	0.0%
	자폐성	18,133	19,524	21,103	22,853	24,698	26,703	8.0%
	정신	95,675	96,963	98,643	100,069	101,175	102,140	1.3%
	신장	66,551	70,434	74,468	78,750	83,562	87,892	5.7%
	심장	6,928	6,401	5,833	5,507	5,399	5,304	-5.2%
	호흡기	13,150	12,445	12,033	11,831	11,807	11,761	-2.2%
	간	9,194	9,668	10,324	11,042	11,843	12,524	6.4%
	안면	2,696	2,689	2,685	2,680	2,692	2,689	-0.1%
	장루.요루	13,546	13,867	14,116	14,404	14,718	15,027	2.1%
간질	7,271	7,084	7,069	6,956	6,935	7,021	-0.7%	

주) 전국 및 경기도 시군구 장애인 유형별 등록현황(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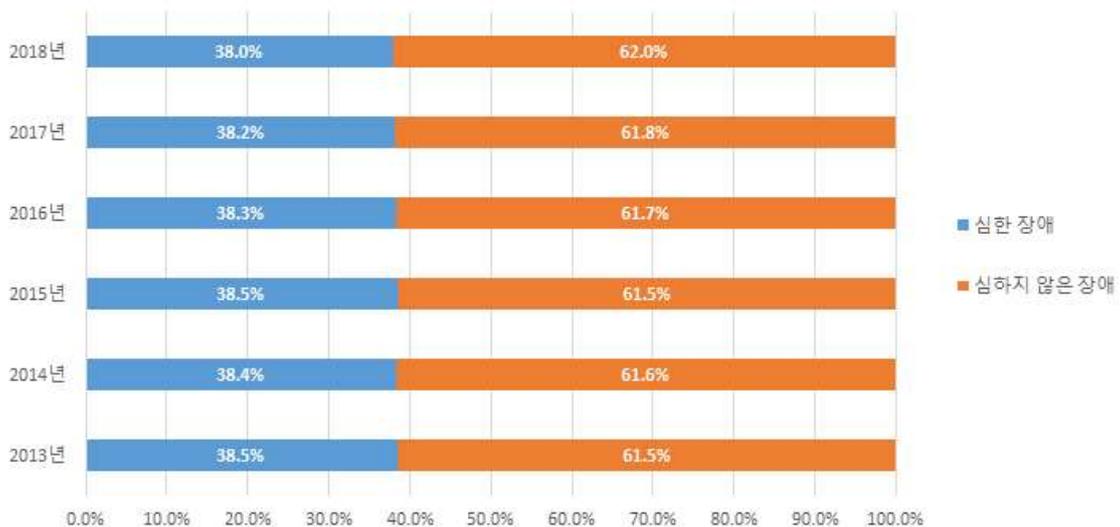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2019.7.)에 따라 기존 1~6등급의 등급제 장애인 구분을 장애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 2013~2018년 경기도의 등록장애인중 ‘심한 장애’의 연평균증가율은 1.3%, ‘심하지 않은 장애’의 연평균증가율은 1.7%

<표 2-4> 장애정도별 등록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경 기 도	합계	506,464	508,330	512,882	522,437	533,259	547,386	1.6%
	심한 장애	195,039	195,358	197,378	200,211	203,930	207,797	1.3%
	심하지 않은 장애	311,425	312,972	315,504	322,226	329,329	339,589	1.7%
전 국	합계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2,545,637	2,585,876	0.7%
	심한 장애	971,102	966,466	965,381	969,557	978,526	983,769	0.3%
	심하지 않은 장애	1,530,010	1,527,994	1,525,025	1,541,494	1,567,111	1,602,107	0.9%

주) 전국 및 경기도 장애인 등급별 등록현황(보건복지부)



<그림 2-2> 경기도 장애정도별 등록인구 추이(2013~2018년)

3. 고령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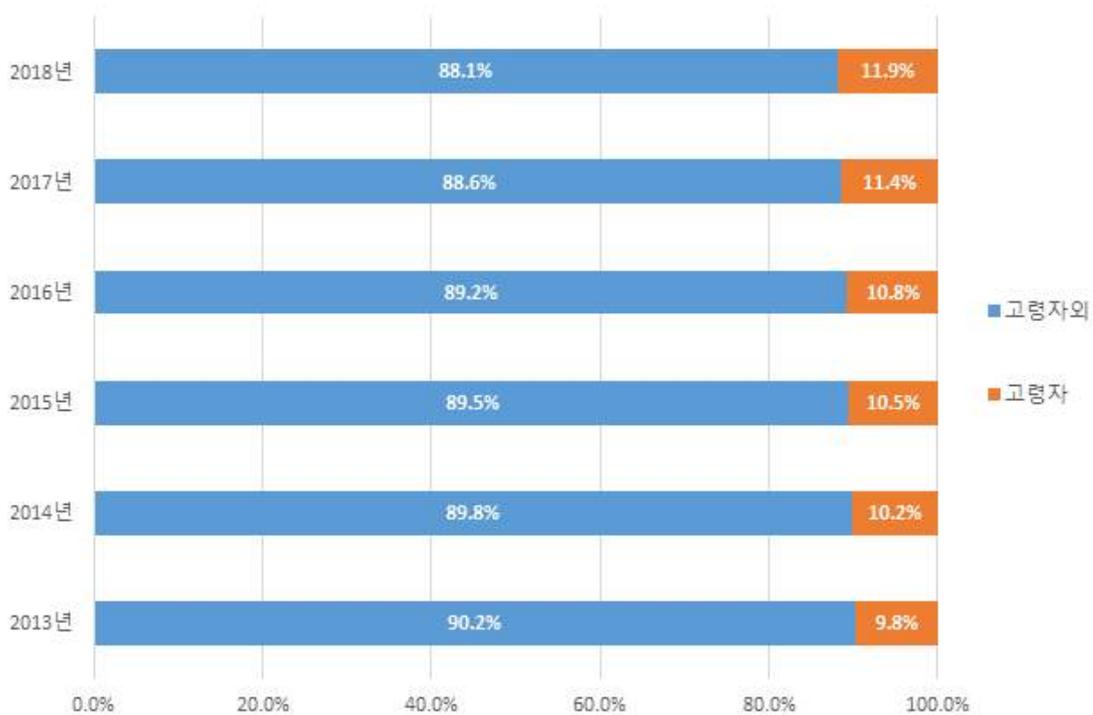
□ 고령자는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 2013년 9.8%에서 2018년 11.9%로 해마다 비율 증가(2013년 대비 2018년 고령자 인구 약 30% 증가)

<표 2-5> 경기도 고령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체인구	고령자(65세이상)	
		소계	구성비
2013년	12,234,630	1,195,523	9.8%
2014년	12,357,830	1,254,445	10.2%
2015년	12,522,606	1,318,882	10.5%
2016년	12,716,780	1,374,475	10.8%
2017년	12,873,895	1,467,835	11.4%
2018년	13,077,153	1,551,801	11.9%

- 주1) 통계청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 연령
- 주2) 전체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



<그림 2-3> 경기도 고령자 추이(2013~2018년)

4. 임신부 현황

□ 임신부는 매년 줄어들어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 점유율이 2013년 0.92%에서 2017년에는 0.68%에 불과, 2013년 임신부 대비 2017년에 약 22% 감소

<표 2-6> 경기도 임신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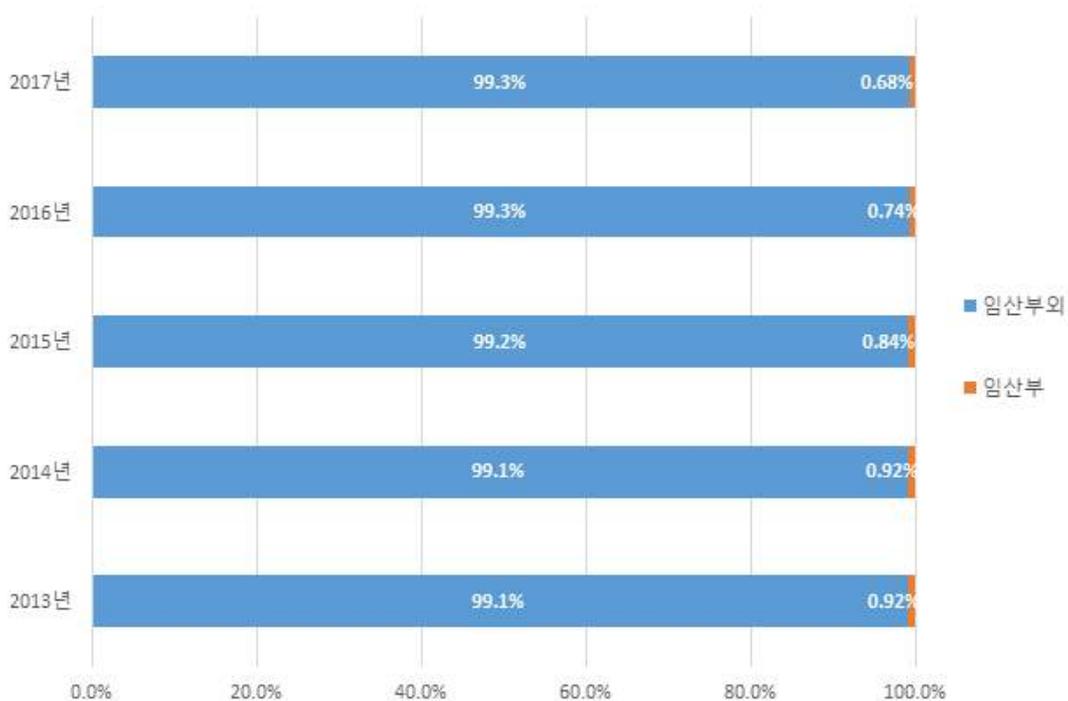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전체인구 ²⁾	임산부 ³⁾	
		소계	구성비
2013년	12,234,630	112,169	0.92%
2014년	12,357,830	113,495	0.92%
2015년	12,522,606	105,643	0.84%
2016년	12,716,780	94,088	0.74%
2017년	12,873,895	88,175	0.68%

주1) 통계청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 연령별 총인구수

주2) 전체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

주3) 2018년 임신부는 2019년 '0세' 인구를 적용하여 가정하여야 하나 통계자료 미확보로 제외



<그림 2-4> 경기도 임신부 추이(2013~2018년)

5. 어린이 현황

□ 어린이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약 5% 차지

- 전체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 구성비는 2013년 5.2%에서 2018년 5.0%로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인구수는 소폭 증가(2013년 어린이 인구 대비 약 3.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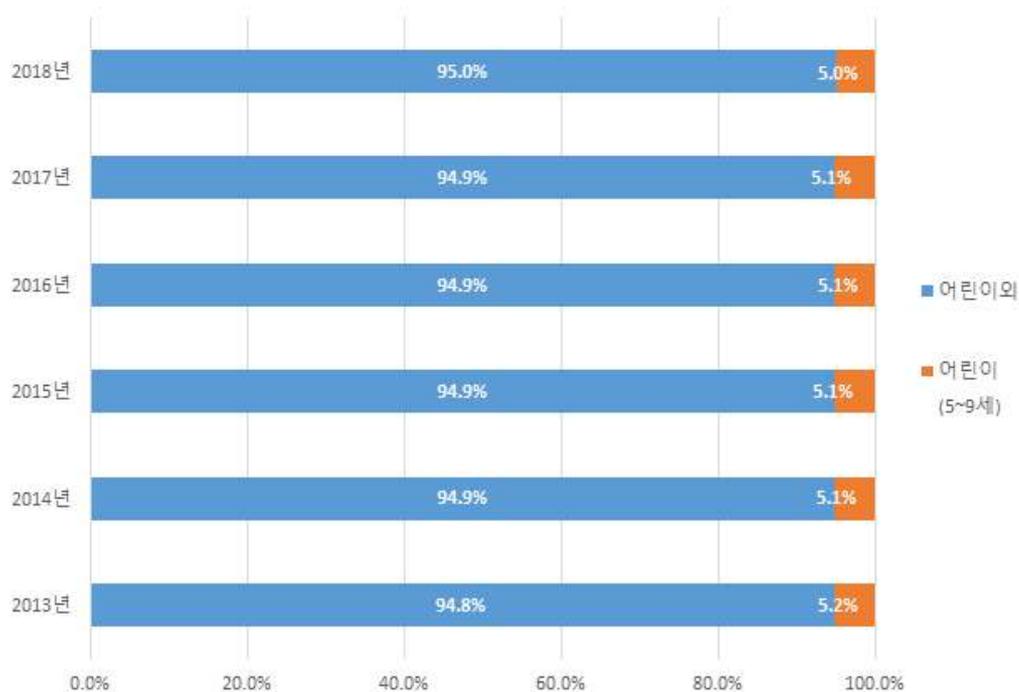
<표 2-7> 경기도 어린이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체인구	어린이(5~9세)	
		소계	구성비
2013년	12,234,630	633,737	5.2%
2014년	12,357,830	629,231	5.1%
2015년	12,522,606	642,218	5.1%
2016년	12,716,780	653,028	5.1%
2017년	12,873,895	656,397	5.1%
2018년	13,077,153	656,105	5.0%

주1) 통계청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 연령별 총인구수

주2) 전체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



<그림 2-5> 경기도 어린이 추이(2013~2018년)

6. 영유아동반자 현황

□ 영유아 동반자는 해마다 감소세 뚜렷

-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2013년 5.0%에서 2018년에는 4.2%로 약 10% 감소

<표 2-8> 경기도 영유아동반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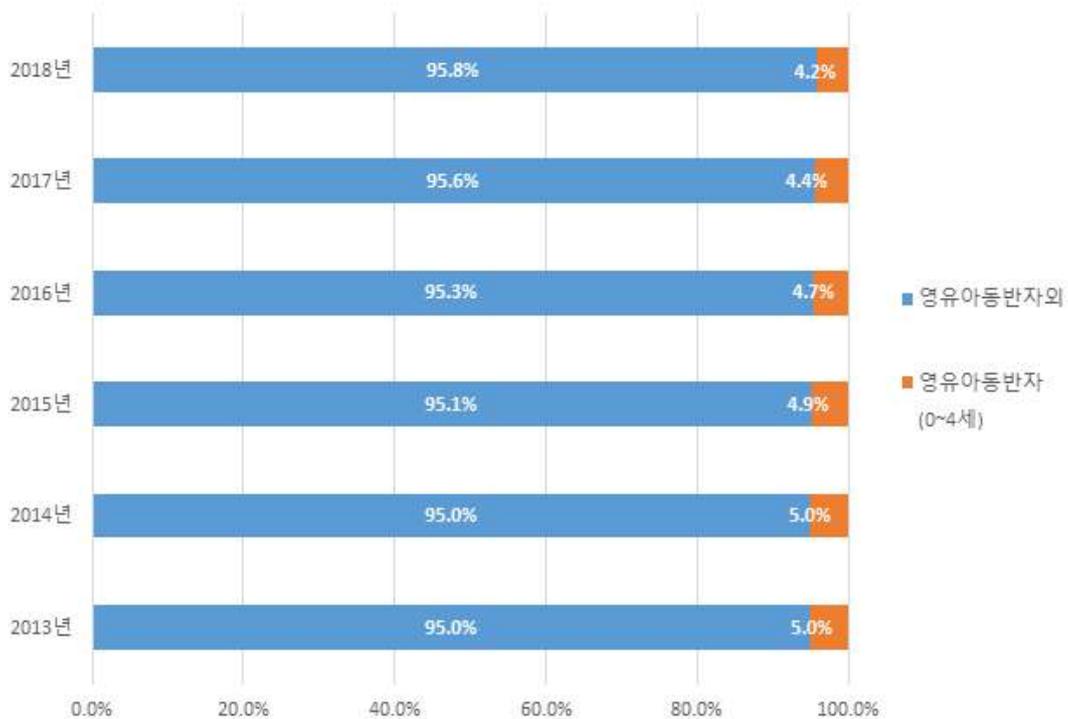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전체인구 ²⁾	영유아동반자(0~4세) ³⁾	
		소계	구성비
2013년	12,234,630	617,839	5.0%
2014년	12,357,830	614,742	5.0%
2015년	12,522,606	609,016	4.9%
2016년	12,716,780	598,082	4.7%
2017년	12,873,895	570,103	4.4%
2018년	13,077,153	553,751	4.2%

주1) 통계청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 연령별 총인구수

주2) 전체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

주3) 영유아동반자는 '0~4세' 인구와 동일하다고 가정



<그림 2-6> 경기도 영유아동반자 추이(2013~2018년)

다. 경기도 교통사고 현황 분석

1. TAAS 교통사고시스템 통합 DB활용

- 교통사고정보 통합관리(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교통안전 대책 추진 지원과 경찰 미신고 사고의 규모 등 국가 교통사고 총량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의 교통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경기도내 고령자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분석
 - 경찰DB는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DB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 대상
 - 통합DB는 경찰에서 접수 처리된 교통사고 외에 보험사 및 공제조합 등에서 접수, 처리된 교통사고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통합DB)로 경찰DB에 보험 및 공제조합의 사고중 도로에서 발생한 인적 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포함
-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공식통계는 경찰DB이나 기수행된 「제1차 경기도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경기도, 2014.02)」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통합DB 활용
 - 고령자는 65세 이상으로 교통약자의 기준과 동일하나 어린이는 12세이하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로서 교통약자 기준과는 상이

2.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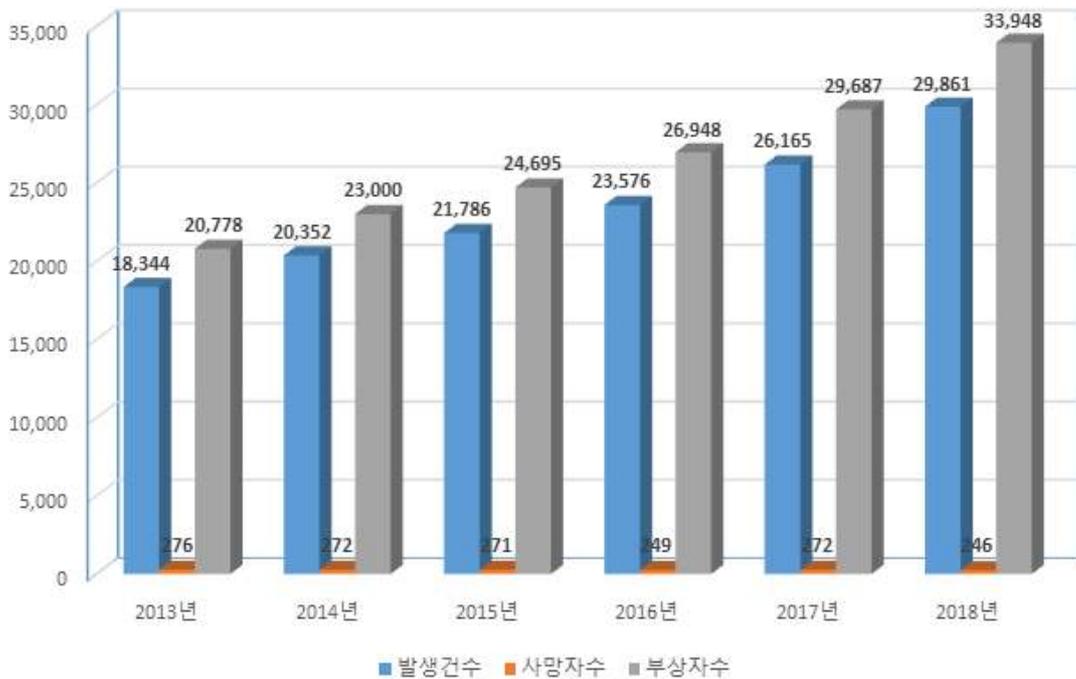
□ 고령화 진행의 가속화에 따라,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부상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

<표 2-9> 경기도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연도	고령자 인구 (65세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건)	고령자 1인당 발생비율	사망자수 (명)	고령자 1인당 발생비율	부상자수 (명)	고령자 1인당 발생비율
2013	1,195,523	18,344	1.53%	276	0.02%	20,778	1.74%
2014	1,254,445	20,352	1.62%	272	0.02%	23,000	1.83%
2015	1,318,882	21,786	1.65%	271	0.02%	24,695	1.87%
2016	1,374,475	23,576	1.72%	249	0.02%	26,948	1.96%
2017	1,467,835	26,165	1.78%	272	0.02%	29,687	2.02%
2018	1,551,801	29,861	1.92%	246	0.02%	33,948	2.19%

주1) TAAS 교통사고 통합DB

주2) 부상자수는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의 합계



<그림 2-7> 경기도 고령자 교통사고 추이(2013~2018년)

3.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12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데 반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표 2-10> 경기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연도	어린이 인구 (12세이하)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 (건)	어린이 1인당 발생비율	사망자수 (명)	어린이 1인당 발생비율	부상자수 (명)	어린이 1인당 발생비율
2013	1,660,433	17,092	1.03%	16	0.001%	23,216	1.40%
2014	1,634,407	18,457	1.13%	17	0.001%	25,241	1.54%
2015	1,629,292	17,863	1.10%	13	0.001%	24,696	1.52%
2016	1,622,304	18,595	1.15%	15	0.001%	25,930	1.60%
2017	1,606,890	19,709	1.23%	10	0.001%	27,422	1.71%
2018	1,605,247	21,165	1.32%	14	0.001%	29,542	1.84%

주1) TAAS 교통사고 통합DB

주2) 부상자수는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의 합계



<그림 2-8> 경기도 어린이 교통사고 추이(2013~2018년)

2 경기도 교통약자 전망

- 통계청 장래 추계인구와 경기도 유형별 인구현황을 고려하여 예측한 교통약자는 2020년 3,264,435명에서 2024년 3,625,482명으로 증가 예상
 -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중 영유아(0~4세), 어린이(5~9세), 고령자(65세 이상) 제외
 - 고령자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임산부가 소폭 증가하나, 장애인,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수는 감소 예상

<표 2-11> 장래 경기도 교통약자 유형별 추계 인구

(단위 : 명)

연도	전체 인구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2020년	13,405,223 (100.0%)	3,264,435 (24.4%)	304,297 (9.3%)	1,708,968 (52.4%)	83,842 (2.6%)	653,247 (20.0%)	514,081 (15.7%)
2021년	13,554,031 (100.0%)	3,336,122 (24.6%)	302,821 (9.1%)	1,823,189 (54.6%)	83,781 (2.5%)	645,953 (19.4%)	480,378 (14.4%)
2022년	13,689,333 (100.0%)	3,419,387 (25.0%)	301,352 (8.8%)	1,945,767 (56.9%)	87,113 (2.5%)	627,354 (18.3%)	457,801 (13.4%)
2023년	13,785,351 (100.0%)	3,513,278 (25.5%)	299,890 (8.5%)	2,079,567 (59.2%)	90,775 (2.6%)	596,871 (17.0%)	446,175 (12.7%)
2024년	13,874,918 (100.0%)	3,625,482 (26.1%)	298,435 (8.2%)	2,220,476 (61.2%)	94,509 (2.6%)	568,498 (15.7%)	443,564 (12.2%)

주1) 2019년 6월 발표 장래추계인구(전체인구,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2017년기준

주2) 임산부는 차년도 '0세인구'로 같음

주3) 장애인 연평균 증가율은 경기도 연평균 증가율(2013~2018년) - 0.49% 적용

주4) 장애인은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중복 제외

Ⅲ. 관련계획 검토

1.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 2016.12)
2.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국토교통부, 2019.12)
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8)
4.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검토

III. 관련계획 검토

1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국토교통부, 2016.12

가. 계획의 개요

1. 성격 및 범위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의 준거가 되는 지침
 - 전국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 제외)을 포함하는 16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정책 추진방향 포함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
- 목표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72.5⇒81.4%)
 - 저상버스 보급률 42% 달성
 - 특별교통수단 보급 전지역 법정 기준 100% 달성

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

-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 설치율 17.6%에 불과한 여객선 등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은 정부·지자체에서 이동편의시설 확충 예산의 지원을 추진하고, 이동편의시설 개선 권고사항은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도 반영토록 추진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저상버스는 2021년 42.0%까지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2016년 말 기준 법정대수 대비 104.2%를 보급, 2021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 100% 유지 및 전 지자체 법정기준 달성
- (중형 저상버스 보급 확대) 교통소외지역,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 목표 도입대수(2019년~2021년)는 전체의 5% 수준인 총 540대, 매년 180대 보급(차령 9년 적용)
 - * 시범운영 및 R&D 과제 완료('17), 양산화 준비('18), 보급('19)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개발) 지역간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안전기준, 운영기술, 운영 시스템 및 예약시스템 개발이 필요
 -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 개발 및 운영효율화」 R&D 시범사업('20년) 통해 실용화 사업('21년)
-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환승·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역 간 이동 보장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각 시·군의 경계점에서 해당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방식 제안



<그림 3-1>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 개선안

2.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 이동편의 개선

-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향상) 2021년까지 여객시설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80% 이상으로 향상
- (보행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2021년 기준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 81% 이상 수준으로 향상

<표 3-1> 부문별 설치율 목표 및 개선·확충사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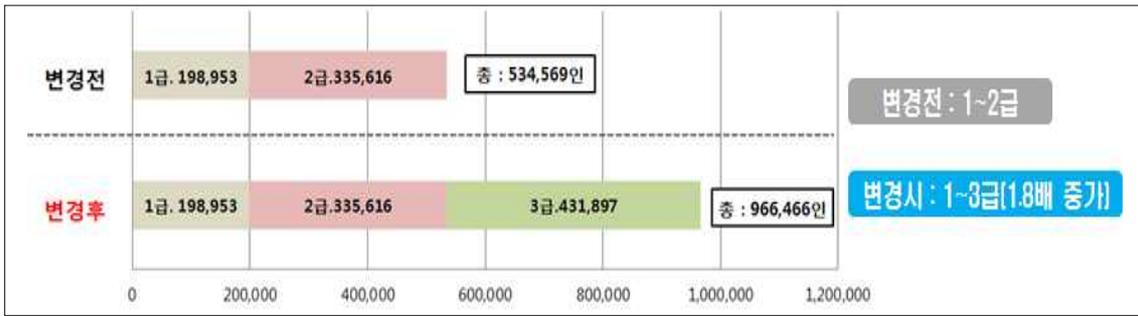
구분	구분	2016년 서비스수준	2021년 서비스수준
교통수단	일반버스	72.2	82
	저상버스	93	90 이상 유지
	도시철도 및 전철	91.7	
	철도차량	93.8	
	항공기	98.7	
		여객선	17.6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54.4	73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83.6	90
	철도역사	81	90
	공항여객터미널	80.9	90
	여객선터미널	67.6	79
	버스정류장	39.4	57
보행환경	전국	72.2	81
	광역도시	75.2	83
	9개 도	66.6	79

3. 교통약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교통사업자 및 일반 국민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시설물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장애인협회 등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교통약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영상 등 제작·보급(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장애인협회 등) 및 UCC 공모전 등 행사 개최(일반인 및 학생대상)

4. 계획의 실행력 제고 및 제도 개선

- (지방 증진계획과의 연계) 지방 교통약자 증진계획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며,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 고시
- (연차별 시행계획) 중앙정부는 시·군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제공
- (모니터링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추진 실적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지자체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기준 변경)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보급대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운 실정(법정기준 보급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향후 장애인 등급제를 기존 6단계 등급제에서 중증, 경증 2단계로 단순화하여 변경할 예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26조에 의거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실질적 설치기준 마련(~'18년)



<그림 3-2> 등급제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

2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2017~2021), 국토교통부, 2019.12

가.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1.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조정

- (법정기준 보급대수 상향)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용대상 확대* 및 법정운행대수 상향**으로 2016년 말(2,816대) 대비 1,777대 추가 보급 필요, 2021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 84% 달성 목표

* (기존) 장애1·2등급 539,388명, (2017년 현재)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89,137명

** 이용대상 200명당 1대 → 150명당 1대로 상향

2.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 및 표준조례 시행

- 휠체어 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자·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운행 매뉴얼 제작·배포('19. 2), 관리자의 점검사항(운전자격, 차량상태 등), 운전자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대응방안 등을 매뉴얼에 따라 운영토록 지자체에 권고
-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과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조례」 시행하여 지자체 조례 제·개정 유도('19.하반기) 및 점검

나.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확대

- (안전기준 마련) 휠체어 탑승자가 개조된 차량 탑승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부 안전기준 마련,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 휠체어 버스 내부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을 위해 법령에 근거 조항 신설('19.하반기)
- (시범사업 실시 및 보급확대) 휠체어 승강설비·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차량 개조, 버스터미널 및 휴게소 시설 개선
 - 시범사업 운영(4개노선, '19.10~'20.1) 후 이동 편의성, 이용자 수요 및 만족도,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단계적 도입 확대('20~)

<표 3-2> 휠체어 이용차량/터미널 개선 계획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차량(대)	10	10	20	40
터미널(개)	8	10	19	37

3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 2018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 추진
- 장애인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계의 적극적 참여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자립, 부양의무제 폐지, 교통수단, 최저임금 적용 폐지 등



<그림 3-3> 정책비전도

4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검토

가. 이동편의시설 현황조사

- 경기도 31개 시·군이 수립한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모두 검토

<표 3-3> 시·군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요

구분	기준년도	목표년도	이동편의시설 현황조사년도	비고
수원시	2015	2017~2021	2016	
고양시	2016	2017~2021	2017	
용인시	2015	2017~2021	2016	
성남시	2016	2017~2021	2016	
부천시	2016	2017~2021	2016	
화성시	2016	2017~2021	2016	
안산시	2016	2017~2021	2016	
남양주시	2017	2017~2021	2017	
안양시	2015	2017~2021	2014	
평택시	2015	2017~2021	2017	
시흥시	2017	2017~2021	-	조사년도 미수록
파주시	2016	2017~2021	2016	
의정부시	2016	2017~2021	2016	
김포시	2016	2017~2021	2017	
광주시	2016	2017~2021	2016	
광명시	2017	2018~2022	2017, 2018	
군포시	2015	2017~2021	2016	
하남시	2016	2017~2021	2017	
오산시	2016	2017~2021	-	조사년도 미수록
양주시	2015	2017~2021	2016	
이천시	2016	2017~2021	2016	
구리시	2016	2017~2021	2016	
안성시	2016	2017~2021	2016	
포천시	2016	2017~2021	2017	
의왕시	2015	2017~2021	2016	
양평군	2015	2017~2021	2017	
여주시	2016	2017~2021	2016	
동두천시	2016	2017~2021	2016	
가평군	2015	2017~2021	2016	
과천시	2016	2017~2021	2016	
연천군	2016	2017~2021	2016	

<표 3-4> 시·군별 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적합(%)	부적합(%)	미설치(%)	비고(조사대상)		
				합계	일반버스	저상버스
경기도	74.8	16.4	8.8	-	-	-
수원시	80.2	15.7	4.1	1,542	1336	206
고양시	81.1	18.9	-	838	765	73
용인시	72.6	17.1	10.4	734	725	9
성남시	75.6	1.3	23.2	1,079	864	215
부천시	61.5	12.4	26.1	845	696	149
화성시	79.7	18.0	2.3	200	200	-
안산시	81.1	15.6	3.3	632	525	107
남양주시	70.8	25.6	3.6	569	493	76
안양시	68.1	20.0	12.0	704	659	45
평택시	61.5	22.8	15.7	326	293	33
시흥시	86.4	9.2	4.4	197	175	22
파주시	76.3	14.1	9.6	534	462	72
의정부시	74.5	20.0	5.4	458	384	74
김포시	73.1	13.2	13.8	619	574	45
광주시	62.6	32.0	5.4	490	394	96
광명시	85.7	10.0	4.3	279	277	2
군포시	85.1	1.7	13.2	94	94	0
하남시	74.1	9.9	16.0	259	241	18
오산시	88.2	7.6	4.2	103	97	6
양주시	68.1	18.3	13.6	142	114	28
이천시	66.7	33.3	-	89	89	0
구리시	75.6	10.6	13.7	164	147	17
안성시	89.4	10.2	0.3	93	86	7
포천시	78.4	16.2	5.4	222	205	17
의왕시	59.4	25.2	15.4	40	40	0
양평군	90.9	9.1	-	44	44	0
여주시	83.3	16.7	-	53	53	0
동두천시	89.0	10.6	0.4	39	37	2
가평군	59.8	33.3	6.9	53	53	0
과천시	58.0	26.1	15.9	15	15	0
연천군	60.9	14.3	24.8	19	18	1

주) 보도, 점자블록, 안내시설, 대기시설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

<표 3-5> 시·군별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

구분	적합	부적합	미설치	비고
경기도	91.9	2.9	5.2	
수원시	-	-	-	미실시
고양시	100.0	-	-	3호선, 경의선
용인시	75.0	-	25.0	경전철
성남시	97.9	-	2.1	분당선, 8호선, 신분당선
부천시	-	-	-	미실시
화성시	-	-	-	미실시
안산시	91.7	-	8.3	4호선
남양주시	100.0	-	-	중앙선, 경춘선
안양시	91.5	8.5	-	1호선, 4호선
평택시	-	-	-	미실시
시흥시	-	-	-	미실시
파주시	-	-	-	미실시
의정부시	92.3	-	7.7	1호선, 7호선, 경전철제외
김포시	-	-	-	미실시
광주시	100.0	-	-	경강선
광명시	100.0	-	-	7호선
군포시	-	-	-	미실시
하남시	-	-	-	미실시
오산시	100.0	-	-	광역1호선
양주시	90.0	6.2	3.8	경원선
이천시	100.0	-	-	경강선
구리시	-	-	-	미실시
안성시	-	-	-	미실시
포천시	-	-	-	미실시
의왕시	91.7	-	8.3	1호선
양평군	100.0	-	-	경의선, 중앙선
여주시	100.0	-	-	경강선
동두천시	-	-	-	미실시
가평군	100.0	-	-	경춘선복선
과천시	100.0	-	-	안산선
연천군	25.0	37.5	37.5	경원선철도

주) 수평이동시설, 수직이동시설, 위생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기타시설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

<표 3-6> 시·군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 개소)

구분	적합	부적합	미설치	조사지점수	비고
경기도	35.1	11.6	53.2		
수원시	41.3	58.7	-	1,038	
고양시	41.6	5.3	53.2	1,039	
용인시	46.9	13.2	39.9	1,053	
성남시	41.0	8.1	50.9	1,194	
부천시	35.1	-	64.9	1,100	
화성시	54.3	9.7	36.1	406	전체 2,560개 중 406개 조사
안산시	39.6	16.5	44.0	1,052	
남양주시	45.8	5.4	48.8	1,388	
안양시	28.3	11.6	60.1	527	
평택시	52.6	13.4	34.0	1,533	
시흥시	27.1	18.4	54.6	834	
파주시	39.2	16.2	44.6	393	
의정부시	24.1	18.0	57.9	607	
김포시	42.7	11.8	45.5	525	
광주시	27.0	0.0	73.0	-	
광명시	52.3	12.1	35.6	237	
군포시	55.0	16.0	29.0	377	
하남시	21.2	13.8	65.0	431	
오산시	29.8	7.4	62.7	126	
양주시	28.8	17.1	54.2	867	
이천시	24.3	-	75.7	1,239	
구리시	36.1	4.3	59.6	258	
안성시	42.0	12.7	45.3	1,102	
포천시	18.5	11.2	70.3	1,175	
의왕시	34.5	16.4	49.1	221	
양평군	2.5	10.4	87.2	65	
여주시	15.7	10.9	73.4	595	
동두천시	48.5	0.1	51.4	180	
가평군	27.4	6.2	66.5	491	
과천시	40.3	7.7	52.0	88	
연천군	26.0	8.1	65.9	168	

주) 보도, 점자블록, 안내시설, 대기시설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

<표 3-7> 시·군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

구분	적합	부적합	미설치	비고
경기도	55.7	9.8	34.5	-
수원시	71.0	29.0	-	수원,서수원버스터미널
고양시	57.1	0.1	42.8	고양종합,화정버스터미널
용인시	50.8	11.5	37.7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성남시	61.8	0.8	37.4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부천시	92.3	5.1	2.6	소풍터미널
화성시	80.8	3.8	15.4	향남환승터미널
안산시	39.8	13.6	46.7	안산종합여객터미널
남양주시	-	-	-	-
안양시	-	-	-	-
평택시	35.0	24.4	40.6	고속, 평택공용, 송탄, 안중터미널
시흥시	35.7	11.4	52.9	시흥종합터미널
파주시	-	-	-	-
의정부시	24.6	16.4	59.0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김포시	-	-	-	-
광주시	72.6	4.5	22.9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명시	-	-	-	-
군포시	-	-	-	-
하남시	91.2	-	8.8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오산시	35.5	7.5	57.1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양주시	-	-	-	-
이천시	39.0	12.5	48.4	이천종합, 장호원버스터미널
구리시	-	-	-	-
안성시	71.2	9.3	19.6	안성종합터미널
포천시	22.4	13.8	63.7	포천시외, 일동시외, 운천시외버스터미널
의왕시	-	-	-	고천시외버스정류장
양평군	50.0	-	50.0	양평터미널,용문터미널
여주시	44.7	3.3	52.0	여주종합터미널, 태평시외버스터미널
동두천시	87.5	6.7	5.8	동부천시외버스터미널
가평군	51.6	14.7	33.6	가평, 청평터미널
과천시	-	-	-	-
연천군	55.6	16.7	27.8	전곡터미널

주) 수평이동시설, 수직이동시설, 위생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기타시설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

<표 3-8> 시·군별 도시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

구분	적합	부적합	미설치	비고
경기도	84.7	4.4	10.9	-
수원시	-	-	-	미실시
고양시	95.6	2.4	2.0	3호선 11개소, 경의선 9개소
용인시	85.5	6.6	7.9	경전철 15개소
성남시	67.7	8.3	23.9	18개소(분당선10, 8호선6, 신분당선2)
부천시	77.4	1.2	21.5	경인선5개소,7호선6개소
화성시	99.0	-	1.0	1개소(병점역)
안산시	89.0	6.4	4.6	4호선 8개소
남양주시	89.8	1.2	9.0	중앙선 6개소, 경춘선 7개소
안양시	71.6	3.5	24.8	도시철도 7개소(1, 4호선)
평택시	82.7	9.3	8.0	5개소
시흥시	93.3	5.0	1.7	4개소
파주시	83.8	14.2	2.0	경의중앙선 7개소
의정부시	70.3	18.5	11.2	도시철도 6개소, 경전철 15개소
김포시	-	-	-	미실시
광주시	93.6	2.6	3.8	경강선 4개소
광명시	79.2	2.0	18.8	3개소
군포시	83.3	1.4	15.3	6개소
하남시	-	-	-	미실시
오산시	86.3	2.8	10.9	4개소
양주시	74.0	8.9	17.1	3개소
이천시	88.2	2.4	9.3	3개소(경강선 신규역사)
구리시	91.7	-	8.3	2개소
안성시	-	-	-	미실시
포천시	-	-	-	미실시
의왕시	87.0	4.1	9.0	1개소
양평군	85.3	5.5	9.0	9개소
여주시	100.0	-	-	2개소(종합결과만표기)
동두천시	90.8	7.5	1.7	5개소
가평군	90.7	0.4	8.9	4개소
과천시	98.1	0.9	1.0	5개소
연천군	47.2	-	52.8	6개소

주) 수평이동시설, 수직이동시설, 위생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기타시설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

<표 3-9> 시·군별 도로(보도)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

구분	적합	부적합	미설치	비고
경기도	66.3	11.0	22.7	-
수원시	71.0	20.4	8.6	33개노선(주간선 13, 보조간선 20)
고양시	63.6	7.6	28.8	12m이상 135개노선
용인시	75.7	15.1	9.1	종로이상 58.5km
성남시	61.3	4.9	33.8	종로이상 476개 구간
부천시	70.8	6.4	22.8	종로이상 215.6km
화성시	71.7	10.3	18.0	종로이상 125.69km
안산시	74.0	16.2	9.8	왕복4차로이하
남양주시	56.5	13.9	29.5	종로이상(왕복4차로)
안양시	68.7	11.8	19.6	종로이상
평택시	87.1	3.8	9.1	종로이상
시흥시	57.6	12.9	29.6	종로이상
파주시	65.4	14.5	20.1	종로이상 145.1km
의정부시	46.0	38.2	15.7	4차로이상 도로
김포시	60.1	8.3	31.8	주요12m이상도로 142.44km
광주시	57.6	6.1	36.3	종로이상
광명시	84.3	3.8	12.6	종로이상
군포시	75.3	3.6	21.1	주요도로 41개 구간
하남시	71.3	7.4	21.2	주요도로
오산시	67.4	5.2	27.4	주요 31개 구간
양주시	73.7	2.8	23.5	주요도로
이천시	62.1	2.2	35.7	종로이상
구리시	75.3	5.7	19.1	종로이상 46개구간
안성시	48.8	6.3	44.9	종로이상의 도로
포천시	67.3	11.4	21.3	주요도로 154.09km
의왕시	80.5	8.6	10.9	종로이상 90.5km
양평군	48.8	15.4	35.8	주요간선도로 보고서수치로 결과 도출
여주시	42.8	14.7	42.4	종로이상 86.8km
동두천시	71.7	12.5	15.9	보도설치된 206.4km
가평군	68.8	16.1	15.1	소로2류이상도로 12개구간
과천시	63.6	9.9	26.5	주간선 2개, 보조간선 7개, 집산도로 5개노선
연천군	66.6	24.7	8.7	연천읍,전곡읍시까지도시계획도로 종로급이상 16개노선

주) 유효폭, 포장, 기울기, 차도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차량진출입부, 턱낮추기,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볼라드, 지하도 및 육교 설치현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하도 상가 항목 점검 결과

- 31개 시·군중 선박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한 지자체는 안산시가 유일하고,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조사는 안산시와 평택시 등 2개 지자체가 실시

<표 3-10> 시·군별 선박 및 여객선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

구분	적합	부적합	미설치	비고
안산시	16.7	13.6	69.7	선박
	31.9	-	68.1	방아머리항터미널
평택시	63.3	18.3	18.3	평택항여객터미널

주1) 선박은 안내시설, 교통약자용좌석, 수직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항목 점검결과

주2) 여객선터미널은 수평이동시설, 수직이동시설, 위생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기타시설 항목 점검 결과

나.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결과

1.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특성 조사

- 경기도내 시·군별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와 함께 조사 대상자들의 외출목적, 외출빈도,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 3가지 일반특성에 대한 조사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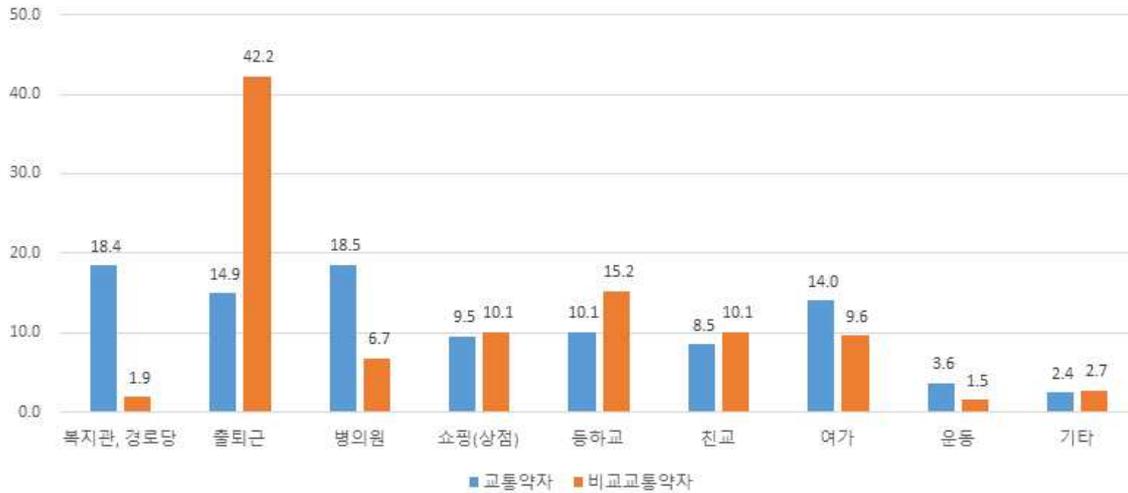
- 지자체별 조사대상은 장애인만, 교통약자, 비교통약자 등 지자체 별로 상이

- 장애인만 조사 : 안양시, 군포시

- 교통약자만 조사 :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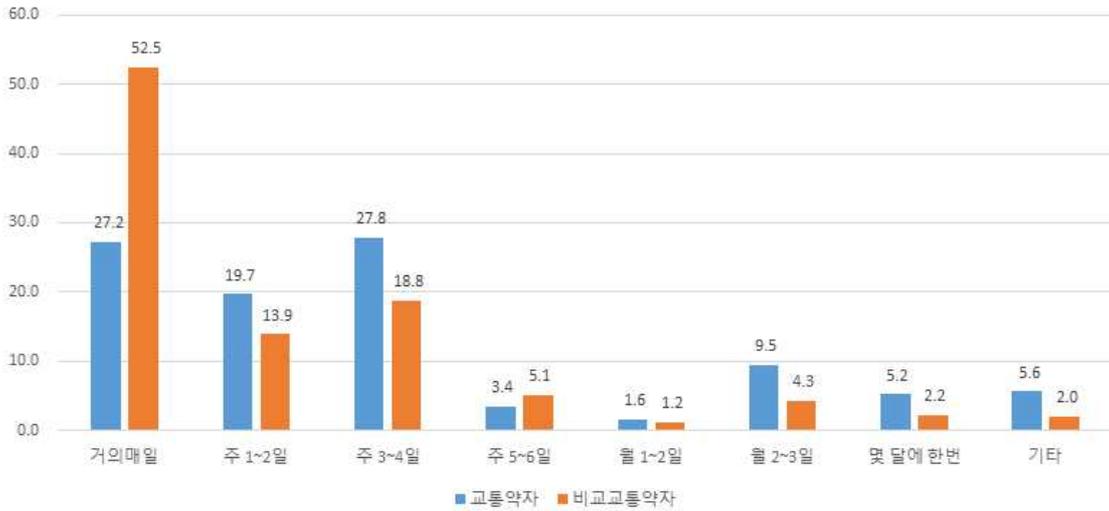
* 일반특성 중 한가지 이상 조사한 경우 모두 포함

- 외출목적의 경우 교통약자는 복지관·경로당(18.4%) 및 병원 의원 통행(18.5%)이 많고, 비교통약자는 출퇴근(42.2%) 및 등하교(15.2%) 통행이 많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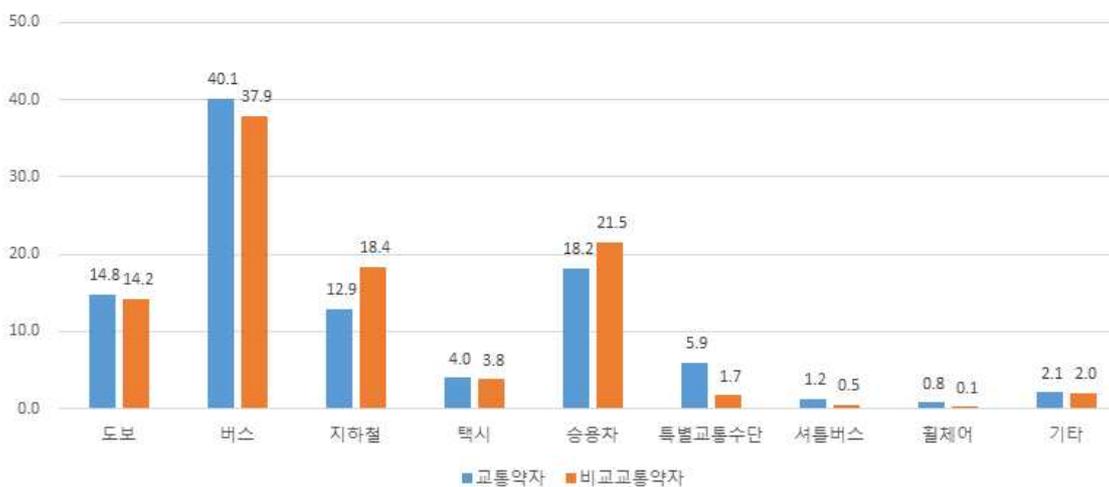
<그림 3-4> 통행목적 조사결과

-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빈도의 경우 주3~4회(27.8%), 거의매일(27.2%), 주1~2회(19.7%), 월2~3회(9.5%) 순으로 나타났고, 비교통약자는 거의 매일(52.5%), 주3~4회(18.8%), 주1~2회(13.9%), 주5~6회(5.1%) 순
- 외출빈도가 주5일 이상(거의매일, 주5~6일)인 경우는 교통약자 30.6%, 비교통약자 57.6%로 나타났으며, 월3일 이하(몇달에 한번, 월1~2일, 월2~3일)도 교통약자 16.3%, 비교통약자 7.7%로 교통약자의 외출빈도가 비교통약자에 비해 50%에 불과



<그림 3-5> 외출빈도 조사결과

-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경우 버스(37.9%), 승용차(21.5%), 지하철(18.4%), 도보(14.2%)순이며 특별교통수단은 5.9%로 나타났고, 비교통약자는 버스(40.1%), 승용차(18.2%), 도보(14.8%), 지하철(12.9%)로 모두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



<그림 3-6> 외출시 이용 교통수단 조사결과

2. 경기도 시·군별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모두 ‘만족(매우 만족 포함)’이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교통약자의 ‘불만족’ 비율이 비교통약자에 비해 높은 편

○ 교통약자의 ‘만족’ 비율 높은 지자체(상위 5개)

- 교통수단 : 구리시, 부천시, 의왕시, 양주시, 용인시
- 여객시설 : 구리시, 평택시, 안산시, 부천시, 의왕시
- 보행환경 : 평택시, 군포시,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 교통약자의 ‘불만족’ 비율 높은 지자체(상위 5개)

- 교통수단 : 연천군, 시흥시, 광주시, 성남시, 오산시
- 여객시설 : 연천군, 가평군,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 보행환경 : 오산시, 가평군, 연천군, 남양주시, 시흥시



<그림 3-7> 이동편의시설별 만족도 조사결과

<표 3-11> 시·군별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자수

구분	합계	교통약자						비교통약자
		소계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경기도	25,337	16,902	-	-	-	-	-	7,015
수원시	1,985	1,809	322	610	774	103	-	176
고양시	260	182	35	91	-	-	56	78
용인시	2,186	1,678	341	632	587	118	-	508
성남시	1,110	555	128	150	133	144	-	555
부천시	1,420	-	-	-	-	-	-	-
화성시	500	290	81	90	-	119	-	210
안산시	1,031	708	295	213	-	105	95	323
남양주시	1,700	1,300	260	600	-	90	350	400
안양시	1,304	636	158	389	-	89	-	668
평택시	1,028	658	189	114	155	87	113	370
시흥시	1,000	700	110	210	220	50	110	300
파주시	550	448	204	38	-	206	-	102
의정부시	413	272	73	125	-	18	56	141
김포시	500	453	171	254	-	28	-	47
광주시	700	451	120	112	-	110	109	249
광명시	682	419	94	111	5	105	104	263
군포시	850	222	92	68	44	18	-	628
하남시	400	400	100	150	60	90	-	-
오산시	399	320	80	81	-	80	79	79
양주시	260	196	72	63	61	-	-	64
이천시	1,000	700	200	200	-	100	200	300
구리시	1,037	1,037	100	422	235	50	230	-
안성시	526	213	50	112	-	51	-	313
포천시	1,400	1,022	810	41	132	24	15	378
의왕시	400	360	58	103	115	50	34	40
양평군	120	120	120	-	-	-	-	-
여주시	400	338	88	112	37	41	60	62
동두천시	564	473	202	199	-	22	50	91
가평군	556	423	158	124	-	67	74	133
과천시	258	120	45	45	30	-	-	138
연천군	798	399	-	-	-	-	-	399

주1) 부천시 일반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세부조사 인원 미기재

주2) 연천군 교통약자 미분류

<표 3-12> 시·군별 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교통약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기타 무응답
경기도	합계	5.9	20.9	44.4	19.9	6.2	2.7
	교통수단	6.3	23.1	43.6	18.8	5.9	2.4
	여객시설	6.0	21.2	44.7	18.6	6.1	3.5
	보행환경	5.6	18.3	44.8	22.4	6.6	2.4
수원시	합계	5.6	22.1	44.9	24.2	3.3	-
	교통수단	6.3	26.2	47.7	18.6	1.3	-
	여객시설	6.4	25.3	43.2	22.6	2.6	-
	보행환경	4.2	14.8	43.8	31.3	5.9	-
고양시	합계	10.6	15.7	41.0	24.3	6.0	2.2
	교통수단	9.2	24.1	40.1	17.7	4.6	4.3
	여객시설	11.7	12.8	41.5	25.9	7.1	1.1
	보행환경	11.0	10.3	41.5	29.4	6.4	1.4
용인시	합계	14.8	22.3	39.8	16.4	6.7	-
	교통수단	15.7	23.9	40.9	12.7	6.9	-
	여객시설	14.3	20.1	40.2	20.2	5.3	-
	보행환경	14.3	22.9	38.5	16.3	8.0	-
성남시	합계	2.6	19.6	49.0	26.3	2.4	-
	교통수단	2.7	10.2	45.8	37.9	3.4	-
	여객시설	2.2	14.7	51.8	29.0	2.2	-
	보행환경	2.8	28.3	49.3	17.8	1.8	-
부천시	합계	9.7	25.3	49.6	13.0	2.3	-
	교통수단	11.6	34.1	43.6	8.9	1.8	-
	여객시설	10.2	28.7	49.3	11.0	0.7	-
	보행환경	7.3	13.2	56.0	19.2	4.4	-
화성시	합계	1.2	12.3	51.8	18.5	5.7	10.7
	교통수단	2.0	13.3	50.8	15.7	6.1	12.3
	여객시설	0.7	10.0	50.1	19.2	5.0	15.1
	보행환경	1.0	13.5	54.4	20.6	5.9	4.7
안산시	합계	1.2	34.7	53.5	9.9	0.8	-
	교통수단	2.9	31.2	53.1	11.8	1.3	-
	여객시설	0.2	42.5	51.5	5.3	0.5	-
	보행환경	0.6	30.5	55.9	12.5	0.7	-
남양주시	합계	1.1	10.7	46.2	26.8	11.7	3.6
	교통수단	1.1	11.9	46.7	26.3	10.2	3.8
	여객시설	1.2	12.2	51.5	23.4	9.4	2.4
	보행환경	0.9	8.0	40.3	30.6	15.5	4.7
안양시	합계	2.5	23.7	51.3	20.0	2.6	-
	교통수단	3.9	29.3	46.1	18.4	2.4	-
	여객시설	2.5	24.9	58.3	12.9	1.5	-
	보행환경	1.1	16.9	49.4	28.7	4.0	-

<표계속>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기타 무응답
평택시	합계	19.1	26.6	22.8	19.9	11.8	-
	교통수단	12.7	24.9	28.0	23.6	10.9	-
	여객시설	21.4	26.8	20.2	18.8	12.9	-
	보행환경	23.1	28.0	20.2	17.3	11.5	-
시흥시	합계	8.2	11.8	39.8	21.2	19.2	-
	교통수단	8.4	9.2	37.4	21.2	24.0	-
	여객시설	7.2	12.3	44.0	21.1	15.5	-
	보행환경	8.9	13.9	38.0	21.2	18.1	-
파주시	합계	9.5	19.6	43.9	20.6	6.5	-
	교통수단	10.2	20.6	46.8	17.0	5.4	-
	여객시설	10.2	20.8	40.7	21.2	7.3	-
	보행환경	8.1	17.3	44.3	23.7	6.7	-
의정부시	합계	8.0	26.9	40.3	10.1	3.3	11.3
	교통수단	10.7	28.6	38.4	8.9	2.6	10.9
	여객시설	7.5	30.6	41.0	8.9	2.8	9.1
	보행환경	5.9	21.5	41.6	12.5	4.6	13.9
김포시	합계	7.9	19.6	49.6	13.2	5.9	3.8
	교통수단	8.8	22.1	52.5	5.5	6.4	4.6
	여객시설	9.5	21.0	48.8	12.6	4.6	3.5
	보행환경	7.0	18.3	48.9	15.9	6.2	3.6
광주시	합계	0.9	15.6	51.7	28.3	3.6	-
	교통수단	1.6	13.8	41.9	38.6	4.3	-
	여객시설	0.9	20.4	59.7	16.3	2.7	-
	보행환경	0.2	12.5	53.4	30.1	3.7	-
광명시	합계	3.2	24.6	45.2	13.0	2.3	11.6
	교통수단	2.6	25.9	44.9	10.7	2.6	13.2
	여객시설	4.0	29.0	46.2	10.6	2.5	7.8
	보행환경	3.1	19.0	44.6	17.8	1.7	13.8
군포시	합계	8.1	24.2	54.4	10.2	2.1	0.9
	교통수단	9.7	19.4	61.1	8.3	1.4	-
	여객시설	5.8	19.0	60.2	9.7	2.5	2.8
	보행환경	8.9	34.2	41.9	12.7	2.3	-
하남시	합계	4.1	9.9	52.0	25.6	8.4	-
	교통수단	5.1	11.1	46.0	26.4	11.4	-
	여객시설	2.8	6.8	56.7	24.8	9.1	-
	보행환경	4.5	11.8	53.2	25.7	4.8	-
	어린이보호구역	3.5	22.8	45.9	16.9	11.0	-

<표계속>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기타 무응답
오산시	합계	2.7	7.2	40.5	42.1	2.5	5.0
	교통수단	3.1	8.1	40.0	37.5	2.5	8.8
	여객시설	2.8	9.4	39.7	38.8	3.1	6.3
	보행환경	2.2	4.1	41.9	50.0	1.9	-
양주시	합계	5.4	23.0	37.0	24.4	7.0	3.3
	교통수단	10.3	31.8	29.7	23.3	5.0	-
	여객시설	3.3	16.9	36.5	26.8	6.7	9.9
	보행환경	2.6	20.4	44.8	23.0	9.2	-
이천시	합계	4.3	22.7	49.0	22.5	1.5	-
	교통수단	0.5	20.7	46.7	30.4	1.9	-
	여객시설	0.4	20.6	54.8	22.1	2.0	-
	보행환경	12.0	26.7	45.6	14.9	0.7	-
구리시	합계	10.3	36.1	36.0	12.3	5.5	-
	교통수단	9.0	45.2	30.1	11.8	3.9	-
	여객시설	17.4	40.1	27.4	9.5	5.8	-
	보행환경	4.5	23.0	50.4	15.5	6.7	-
안성시	-	교통약자, 비교통약자 구분없이 조사					
포천시	-	만족도조사가 아닌 우선개선시설 순위만 조사					
의왕시	합계	7.9	31.1	45.0	12.2	3.9	-
	교통수단	8.5	35.3	43.6	9.7	3.1	-
	여객시설	8.2	30.0	47.6	10.8	3.3	-
	보행환경	7.0	27.9	43.7	16.2	5.2	-
양평군	합계	0.4	8.9	55.3	21.3	2.9	11.3
	교통수단	0.4	17.1	67.5	13.4	1.7	-
	여객시설	0.9	6.3	35.9	17.1	6.3	33.8
	보행환경	-	3.3	62.5	33.3	0.8	-
여주시	합계	5.7	23.2	41.1	16.1	4.4	9.7
	교통수단	7.7	29.3	39.4	10.2	2.1	11.4
	여객시설	5.5	21.4	42.4	16.5	5.5	8.7
	보행환경	3.8	18.8	41.4	21.5	5.5	8.9
동두천시	합계	2.1	22.6	51.3	22.0	2.1	-
	교통수단	3.4	28.0	48.1	18.3	2.2	-
	여객시설	1.5	21.7	52.9	22.2	1.7	-
	보행환경	1.3	18.0	52.8	25.5	2.5	-
가평군	합계	9.3	19.7	29.8	28.6	12.6	-
	교통수단	8.5	21.7	39.5	25.2	5.1	-
	여객시설	8.4	21.0	28.5	28.2	13.9	-
	보행환경	11.0	16.3	21.4	32.4	18.8	-

<표계속>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기타 무응답
과천시	합계	0.3	33.3	49.1	16.6	0.8	-
	교통수단	-	36.3	43.3	18.4	2.1	-
	여객시설	0.8	37.1	46.7	15.5	-	-
	보행환경	-	26.5	57.3	15.8	0.4	-
연천군	합계	4.7	12.8	25.3	18.6	32.4	6.2
	교통수단	4.9	15.3	25.6	20.1	34.2	-
	여객시설	5.2	12.7	28.8	18.5	34.8	-
	보행환경	4.1	10.5	21.5	17.3	28.1	18.5

주) 시·군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16개시·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우선개선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교통수단에서는 버스, 여객시설에서는 버스정류장, 보행환경에서는 보도에 대한 우선개선 요구

<표 3-13> 시·군별 우선 개선순위 조사결과

구분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비고
안양시	버스	-	-	부문별 조사 미실시
평택시	-	버스정류장	보도	교통수단 미조사
시흥시	-	버스정류장	보도	교통수단 미조사
파주시	버스	버스정류장	보도	-
광주시	버스	버스정류장	보도	-
하남시	버스	-	보도	여객시설 미조사
오산시	버스	접근보행로	횡단보도	-
양주시	버스	접근보행로	보도	-
이천시	버스	버스정류장	보도	-
구리시	버스	버스정류장	보도	-
안성시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통수단 미조사
포천시	버스	버스터미널	보도	-
양평군	-	버스정류장	-	부문별 조사 미실시
동두천시	-	-	도로시설	부문별 조사 미실시
과천시	버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연천군	-	-	도로시설	부문별 조사 미실시

다. 연차별 투자계획

<표 3-14> 시·군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종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기도	계	531,238.50	74,717.23	111,843.59	108,822.59	116,959.10	117,086.99	1,809.00
	국비	67,080.00	8,288.90	16,479.60	13,201.00	15,138.50	13,972.00	-
	도비	37,228.30	5,892.04	8,516.30	7,204.80	7,803.80	7,811.36	-
	시비	414,546.20	60,536.29	84,103.69	85,805.79	91,406.80	92,693.63	-
수원시	계	62,937.00	10,995.00	12,163.00	12,823.00	13,363.00	13,593.00	-
	국비	4,620.00	1,044.00	1,044.00	844.00	844.00	844.00	-
	도비	3,488.00	654.00	696.00	704.00	713.00	721.00	-
	시비	54,829.00	9,297.00	10,423.00	11,275.00	11,806.00	12,028.00	-
고양시	계	57,736.00	9,126.00	10,613.00	11,456.00	12,233.00	14,308.00	-
	국비	2,950.00	700.00	600.00	650.00	500.00	500.00	-
	도비	1,333.00	273.00	258.00	239.00	320.00	243.00	-
	시비	53,453.00	8,153.00	9,755.00	10,567.00	11,413.00	13,565.00	-
용인시	계	16,121.04	1,446.74	9,104.94	299.67	4,452.14	817.55	-
	국비	7,300.00	600.00	4,850.00	-	1,750.00	100.00	-
	도비	1,755.00	90.00	1,387.50	-	262.50	15.00	-
	시비	7,066.04	756.74	2,867.44	299.67	2,439.64	702.55	-
성남시	계	17,085.20	1,809.00	646.30	4,615.10	5,080.10	4,934.70	-
	국비	4,000.00	-	-	1,300.00	1,350.00	1,350.00	-
	도비	600.00	-	-	195.00	202.50	202.50	-
	시비	12,485.20	1,809.00	646.30	3,120.10	3,527.60	3,382.20	-
부천시 ¹⁾	계	22,334.68	3,750.34	5,400.92	5,367.00	4,655.72	3,160.70	-
	국비	6,150.40	1,240.00	1,240.00	1,240.00	1,240.00	1,190.40	-
	도비	922.56	186.00	186.00	186.00	186.00	178.56	-
	시비	15,261.72	2,324.34	3,974.92	3,941.00	3,229.72	1,791.74	-
화성시	계	34,143.60	4,324.70	6,392.00	7,080.90	7,781.60	8,564.40	-
	국비	1,951.50	495.00	418.50	346.00	346.00	346.00	-
	도비	4,807.10	774.30	858.20	958.20	1,058.20	1,158.20	-
	시비	27,385.00	3,055.40	5,115.30	5,776.70	6,377.40	7,060.20	-
안산시 ²⁾	계	12,068.00	2,903.00	2,786.00	2,397.00	1,991.00	1,991.00	-
	국비	1,540.00	278.00	478.00	528.00	128.00	128.00	-
	도비	240.00	30.00	120.00	30.00	30.00	30.00	-
	시비	10,288.00	2,595.00	2,188.00	1,839.00	1,833.00	1,833.00	-
남양주시	계	24,832.80	1,362.00	5,518.60	5,756.60	6,060.20	6,135.40	-
	국비	3,300.00	-	800.00	800.00	850.00	850.00	-
	도비	3,736.70	416.40	976.00	740.00	795.30	809.00	-
	시비	17,796.10	945.60	3,742.60	4,216.60	4,414.90	4,476.40	-
안양시 ³⁾	계	16,904.50	2,946.00	3,473.50	3,385.00	3,385.00	3,715.00	-
	국비	-	-	-	-	-	-	-
	도비	-	-	-	-	-	-	-
	시비	16,904.50	2,946.00	3,473.50	3,385.00	3,385.00	3,715.00	-
평택시	계	28,100.00	4,747.00	5,076.00	6,026.00	6,176.00	6,075.00	-
	국비	2,880.00	390.00	290.00	700.00	700.00	800.00	-
	도비	4,364.00	699.00	785.00	950.00	950.00	980.00	-
	시비	20,856.00	3,658.00	4,001.00	4,376.00	4,526.00	4,295.00	-

<표계속>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흥시	계	18,263.80	2,224.60	4,106.70	4,218.80	4,095.40	3,618.30	-
	국비	2,425.50	44.10	617.40	617.40	573.30	573.30	-
	도비	2,374.30	515.70	536.20	428.20	441.10	453.10	-
	시비	13,464.00	1,664.80	2,953.10	3,173.20	3,081.00	2,591.90	-
파주시 ⁴⁾	계	18,029.60	2,281.80	3,221.30	4,105.00	4,224.80	4,196.70	-
	국비	3,193.00	498.50	600.50	673.00	710.50	710.50	-
	도비	2,438.40	413.00	455.20	493.40	523.40	553.40	-
	시비	12,398.20	1,370.30	2,165.60	2,938.60	2,990.90	2,932.80	-
의정부시	계	8,860.47	480.45	1,906.49	2,508.54	2,509.54	1,455.45	-
	국비	2,800.00	-	560.00	840.00	840.00	560.00	-
	도비	1,400.00	-	280.00	420.00	420.00	280.00	-
	시비	4,660.47	480.45	1,066.49	1,248.54	1,249.54	615.45	-
김포시	계	32,781.22	5,129.80	6,889.80	6,889.80	6,889.80	6,982.02	-
	국비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도비	2,25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
	시비	23,031.22	3,179.80	4,939.80	4,939.80	4,939.80	5,032.02	-
광주시	계	17,764.90	3,379.60	3,795.70	3,395.70	3,395.70	3,798.20	-
	국비	4,000.00	750.00	950.00	750.00	750.00	800.00	-
	도비	1,200.00	225.00	285.00	225.00	225.00	240.00	-
	시비	12,564.90	2,404.60	2,560.70	2,420.70	2,420.70	2,758.20	-
광명시	계	12,384.00	-	2,744.00	2,611.00	2,610.00	2,610.00	1,809.00
	국비	-	-	-	-	-	-	-
	도비	-	-	-	-	-	-	-
	시비	-	-	-	-	-	-	-
군포시	계	6,030.80	1,330.36	1,556.36	1,293.36	1,293.36	557.36	-
	국비	-	-	-	-	-	-	-
	도비	-	-	-	-	-	-	-
	시비	6,030.80	1,330.36	1,556.36	1,293.36	1,293.36	557.36	-
하남시	계	11,568.00	666.60	2,371.70	2,850.10	2,818.90	2,860.70	-
	국비	2,337.30	-	573.30	573.30	617.40	573.30	-
	도비	1,400.80	108.30	251.20	388.40	320.00	332.90	-
	시비	7,829.90	558.30	1,547.20	1,888.40	1,881.50	1,954.50	-
오산시 ⁵⁾	계	3,584.84	12.00	555.12	449.76	1,283.98	1,283.98	-
	국비	1,250.00	-	100.00	100.00	525.00	525.00	-
	도비	-	-	-	-	-	-	-
	시비	2,334.84	12.00	455.12	349.76	758.98	758.98	-
양주시 ⁶⁾	계	10,849.00	2,078.60	1,886.10	1,944.10	2,343.10	2,597.10	-
	국비	282.00	98.00	46.00	46.00	46.00	46.00	-
	도비	619.10	160.30	112.90	114.10	115.30	116.50	-
	시비	9,947.90	1,820.30	1,727.20	1,784.00	2,181.80	2,434.60	-
이천시	계	13,030.50	2,658.20	2,489.00	2,489.00	2,489.00	2,905.30	-
	국비	-	-	-	-	-	-	-
	도비	-	-	-	-	-	-	-
	시비	13,030.50	2,658.20	2,489.00	2,489.00	2,489.00	2,905.30	-
구리시	계	10,910.40	1,596.20	2,842.00	1,802.40	2,042.40	2,627.40	-
	국비	1,422.50	180.00	100.00	205.00	305.00	632.50	-
	도비	1,028.70	84.00	212.00	177.50	217.50	337.70	-
	시비	8,459.20	1,332.20	2,530.00	1,419.90	1,519.90	1,657.20	-

<표계속>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안성시	계	6,397.50	1,696.50	1,377.00	1,107.00	1,108.00	1,109.00	-
	국비	1,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
	도비	673.50	217.50	235.50	73.50	73.50	73.50	-
	시비	4,474.00	1,229.00	891.50	783.50	784.50	785.50	-
포천시	계	10,472.15	1,576.04	1,910.36	2,037.16	2,222.16	2,726.43	-
	국비	750.00	-	90.00	120.00	170.00	370.00	-
	도비	1,709.04	367.54	280.50	307.50	339.50	414.00	-
	시비	8,013.11	1,208.50	1,539.86	1,609.66	1,712.66	1,942.43	-
의왕시	계	3,879.40	236.00	552.70	727.20	1,433.90	929.60	-
	국비	120.00	40.00	40.00	40.00	-	-	-
	도비	64.00	12.00	13.00	13.00	13.00	13.00	-
	시비	3,695.40	184.00	499.70	674.20	1,420.90	916.60	-
양평군	계	8,429.00	30.00	2,540.00	2,342.00	1,929.00	1,588.00	-
	국비	1,691.00	-	577.00	577.00	338.00	199.00	-
	도비	-	-	-	-	-	-	-
	시비	6,738.00	30.00	1,963.00	1,765.00	1,591.00	1,389.00	-
여주시	계	5,378.20	1,507.80	1,237.00	1,232.60	890.30	510.50	-
	국비	-	-	-	-	-	-	-
	도비	-	-	-	-	-	-	-
	시비	5,378.20	1,507.80	1,237.00	1,232.60	890.30	510.50	-
동두천시	계	6,402.00	400.00	1,507.00	980.00	1,080.00	2,435.00	-
	국비	505.00	-	55.00	85.00	140.00	225.00	-
	도비	190.00	8.00	22.00	31.00	49.00	80.00	-
	시비	5,707.00	392.00	1,430.00	864.00	891.00	2,130.00	-
가평군	계	9,147.70	1,681.50	1,681.50	1,681.50	1,972.20	2,131.00	-
	국도비	1,393.20	131.30	131.30	131.30	425.30	574.00	-
	군비	7,754.50	1,550.20	1,550.20	1,550.20	1,546.90	1,557.00	-
과천시	계	1,913.00	-	243.60	481.60	692.00	495.80	-
	국비	-	-	-	-	-	-	-
	도비	-	-	-	-	-	-	-
	시비	1,913.00	-	243.60	481.60	692.00	495.80	-
연천군 ⁷⁾	계	16,497.20	1,941.40	3,748.90	3,489.70	3,377.80	3,939.40	-
	국비	963.60	50.00	513.60	200.00	100.00	100.00	-
	도비	444.10	200.00	94.10	50.00	50.00	50.00	-
	시비	15,089.50	1,691.40	3,141.20	3,239.70	3,227.80	3,789.40	-

주1) 부천시 합계 상이

주2) 안산시 시비합계 상이

주3) 안양시 여객시설 합계 누락

주4) 파주시 시비합계 상이

주5) 오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누락

주6) 양주시 시비합계 상이

주7) 연천군 특별교통수단 누락

IV. 제1차 지원계획 추진성과 분석

1. 제1차 지원계획의 내용
2.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IV. 제1차 지원계획 추진성과 분석

1

제1차 지원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개요

- 경기도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31개 시군에서 5년 단위 (2013~2017년)로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
- 시·군별 교통약자 서비스 균형 및 통합 협력체계 구성을 목적으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공급 확대, 광역적 이용을 위한 지자체별 통합 지원, 지속적인 지자체별 교통약자시설 모니터링,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전환 제고를 목표로 설정

나. 세부 지원계획

- 각 부문별 목표와 세부 지원계획을 제시
 - 특별교통수단 확충 2013년 245대→2014년말 558대로 법정대수 충족
 - 저상버스 도입목표치 설정 2013년 보급률 14.2%→2017년 34.0%
 - *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이 많아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워 기존 40.0%에서 34.0%로 조정

- 시·군별 이동편의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설치현황과 부합성을 검토후 시군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설정
 - * 포천시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2012년 12%→2016년 64%, 포천시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2012년 16%→2016년 70%
 - 복지택시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이 불필요한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수요처리
 - * 일반택시를 복지택시 전용으로 계약하는 방식과 운행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활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서비스 추진성과를 각지자체별로 게시하도록 유도하여 긍정적인 경쟁 분위기 조성
 - 특별교통수단 광고제 도입(차량 내·외부)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매년 증가되는 운영비용으로 활용
 -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관심을 위한 홍보 및 교통약자 관련자(운영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하여 경기도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지원
- 각 지자체별로 자체 구축·운영중인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에 이용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용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
 - 운영시간 통합, 이용대상자 관리, 관외운행지역 조정, 예약제와 즉시콜제 병행, 이용요금 통합(관내 1500원, 관외 150원/km)
 - 필수적인 통합 call 서비스와 함께 별도프로그램을 이용한 관외차량 공차율을 줄이는 방안을 선정

2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가. 평가기준

- 제1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제1차 지원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군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하 제3차 증진계획)의 현황조사 결과와 비교
- 제1차 지원계획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도) 이동편의시설 현황조사 기준 적용

1.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현황

<표 4-1> 버스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구 분	분 류	세부항목
안내시설	자동안내방송시설	- 명확한 음량 및 음색 - 국어와 영어사용
	전자문자안내판	- 차량 내부설치 및 시인성 확보 - 한글과 영문표기
	행선지 표시	- 차량 외부표시(정면·후면·측면) - 강한햇빛 및 야간 식별 가능한소재 사용
교통약자용 좌석		- 전체 좌석의 1/3이상 설치 - 약자용 좌석 안내판 - 휠체어 전용공간 설치
수직손잡이		- 설치유무(2열 또는 3열마다 설치) - 지름 3cm내외
휠체어 승강설비 ¹⁾		- 유효폭 0.8m 이상 -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재질 - 계단코 식별가능(다른색상)
		- 휠체어 자동경사판 설치여부
	장애인접근 가능 표시 ¹⁾	- 휠체어 사용자 접근가능 표시

주1) ‘저상버스’에 해당하는 항목

<표 4-2>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구분	분류	세부항목
안내시설	자동안내방송시설	- 명확한 음량 및 음색
		- 국어와 영어사용
	전자문자안내판	- 차량 내부설치 및 시인성 확보
		- 한글과 영문표기
	행선지표시	- 차량 외부표시(정면·후면·측면)
		- 강한햇빛 및 야간 식별 가능한소재 사용
교통약자용 좌석	- 전체좌석의 1/3이상 설치	
	- 약자용 좌석 안내판	
	- 휠체어 전용공간 설치	
수직손잡이	- 설치유무(2열 또는 3열마다 설치)	
	- 지름 3cm내외	
장애인접근 가능 표시	- 휠체어 사용자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 유효폭 0.8m 이상	

2.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현황

<표 4-3>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구분	법적기준
보도	연석높이 15cm 이하
	휠체어 활동공간(진출입·회전)
점자블록	점형블록
	선형블록
안내시설	안내판위치(1.5m내외)
	점자안내
	음성안내
대기시설	대기시설(Shelter)유무

<표 4-4>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구분		법적기준
수평 이동시설	보행접근로	-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
	주출입구	- 유효폭 0.9m 이상, 유효높이 2.1m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제원(직각 3.3m×5.0m, 평행 2.0m×6.0m), 주차 구역 바닥면 기울기 (1/50이하) 등
	점자안내판 유무	- 주출입구의 0.3m 전면 점형블록 설치
	통로	- 통로 유효폭(2m이상), 손잡이(높이 0.8m 이상 0.9m 이하, 지름 3.2cm이상 3.8cm 이하)
수직 이동시설	경사로	- 경사로 유효폭(2.0m이상). 시작, 끝, 굴절부분 및 1.5m×1.5m의 활동공간 확보
	승강기	-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의 전면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에스컬레이터	- 수평이동 손잡이 1.2m 이상 설치, 유효폭 0.8m 이상
	계단	- 유효폭(2.0m 이상), 디딤판(디딤판의 너비 0.28m이상)
위생시설	장애인전용화장실	- 전용화장실 설치유무
안내시설	점자블록	- 규격 및 색상(0.3m×0.3m, 점형블록당 36개 돌출점, 선형블록당 4개 돌출선, 황색을 원칙적으로 사용)
	유도 및 안내시설	- 유도, 안내시설 유무
	경보 및 피난시설	-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 유무
기타시설 (판매·탑승)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높이 0.7m ~ 0.9m 이하 설치
	승강장	- 안전펜스 및 점형블럭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유무

<표 4-5> 도시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구분		법적기준
수평 이동시설	보행접근로	-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
	주출입구	- 유효폭 0.9m 이상, 유효높이 2.1m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제원(직각 3.3m×5.0m, 평행 2.0m×6.0m), 주차 구역 바닥면 기울기 (1/50이하) 등
	점자안내판 유무	- 주출입구의 0.3m 전면 점형블록 설치
	통로	- 통로 유효폭(2m이상), 손잡이(높이 0.8m 이상 0.9m 이하, 지름 3.2cm이상 3.8cm 이하)
수직 이동시설	경사로	- 경사로 유효폭(2.0m이상). 시작, 끝, 굴절부분 및 1.5m×1.5m의 활동공간 확보
	승강기	-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의 전면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에스컬레이터	- 수평이동 손잡이 1.2m 이상 설치, 유효폭 0.8m 이상
	계단	- 유효폭(2.0m 이상), 디딤판(디딤판의너비 0.28m 이상)
위생시설	장애인전용화장실	- 전용화장실 설치유무
안내시설	점자블럭	- 규격 및 색상(0.3m×0.3m, 점형블럭당 36개 돌출점, 선형블럭당 4개 돌출선, 황색을 원칙적으로 사용)
	유도 및 안내시설	- 유도, 안내시설 유무
	경보 및 피난시설	-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 유무
기타시설 (판매·탑승)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높이 0.7m ~ 0.9m 이하 설치
	승강장	- 안전펜스 및 점형블럭 설치
	임산부 휴게시설	-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유무
	개찰구	- 유효폭 0.8m 이상 설치

주) 도시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은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에 “개찰구 유무” 항목 추가

3. 도로(보도) 이동편의시설 현황

<표 4-6> 도로(보도) 이동편의시설 현황 점검표

구분		법적기준
유효폭	보도의 유효폭	- 보행로의 유효폭 2m 확보
포장	보도 재질 및 마감	- 잘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기울기	보도 기울기	- 진행방향 1/18, 좌우기울기 1/25
	횡단보도 연석경사로	- 기울기 1/12 이하
차도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차도분리	- 차도와 보도의 분리
	보행안전지대	-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
	장애물 구역 확보	- 가로등, 전주, 간판 등을 설치하는 구역
차량진출입부	설치방법	- 높이차 2cm 이하
	재질 및 색상	- 색상 및 질감을 달리설치
턱낮추기	보도 높이차이 제거	- 진행방향상의 2cm 이하
	횡단보도 경계구간 높이차이	- 경계구간 높이차 2cm 이하
점자블록	점자블록	- 0.3m 전면에 설치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음향신호기 안내방법	- 균일한 신호음 작동
	음향신호기 설치위치	- 횡단보도와 1m 이내, 높이 1.5m
	잔여시간표시기	- 기호/숫자 형태
블라드	설치형태	-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간격	- 1.5m 간격으로 설치
지하도 및 육교	설치방법	- 계단 양측에 손잡이 설치
	점자블록	- 계단 시작끝 0.3m 전면에 설치

나. 평가결과 종합비교

<표 4-7> 시·군별 버스 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단위 : %)

구분	2차증진계획(1차지원계획)			3차증진계획		
	적합	부적합	미설치	적합	부적합	미설치
경기도	58.3	19.3	22.4	70.8	20.2	9.0
수원시	74.0	15.0	11.1	76.6	18.2	5.2
고양시	-	-	-	73.2	26.8	-
용인시	69.5	9.7	20.8	66.7	20.1	13.2
성남시	-	-	-	78.8	1.9	19.5
부천시	36.7	18.7	44.6	76.8	15.4	7.8
화성시	70.7	18.0	11.3	73.3	23.7	3.0
안산시	52.2	7.1	40.7	75.9	19.8	4.2
남양주시	55.9	23.4	20.7	65.5	30.3	4.3
안양시	-	-	-	63.1	22.8	14.1
평택시	51.3	21.6	27.0	55.3	29.1	15.6
시흥시	64.0	20.8	15.2	83.8	12.3	4.0
파주시	45.5	28.3	26.2	66.4	19.9	13.7
의정부시	70.8	13.2	16.0	62.9	29.2	7.9
김포시	57.5	15.0	27.5	60.9	19.2	20.0
광주시	62.7	19.3	18.0	49.0	43.7	7.3
광명시	68.0	17.1	14.9	82.8	12.0	5.2
군포시	78.3	1.5	20.2	83.2	1.9	14.9
하남시	66.7	20.0	13.3	66.9	11.8	21.3
오산시	-	-	-	84.7	8.0	7.3
양주시	53.8	41.5	4.7	63.4	22.3	14.3
이천시	55.1	28.2	16.7	60.0	40.0	-
구리시	-	-	-	75.9	15.4	8.7
안성시	-	-	-	89.8	9.7	0.5
포천시	55.5	23.7	20.8	69.4	23.0	7.6
의왕시	39.0	12.5	48.5	55.5	26.4	18.2
양평군	-	-	-	90.9	9.1	-
여주시	55.4	26.2	18.4	80.0	20.0	-
동두천시	65.1	12.7	22.2	85.0	14.5	0.5
가평군	53.0	30.0	17.0	59.8	33.3	6.9
과천시	37.9	23.7	38.4	53.9	27.3	18.8
연천군	-	-	-	65.3	20.0	14.7

<표 4-8> 시·군별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단위 : %)

구분	2차증진계획(1차지원계획)			3차증진계획		
	적합	부적합	미설치	적합	부적합	미설치
경기도	92.2	2.2	5.6	91.9	2.9	5.2
수원시	-	-	-	-	-	-
고양시	-	-	-	100.0	-	-
용인시	79.2	4.2	16.6	75.0	-	25.0
성남시	-	-	-	97.9	-	2.1
부천시	-	-	-	-	-	-
화성시	-	-	-	-	-	-
안산시	91.7	-	8.3	91.7	-	8.3
남양주시	98.1	1.9	-	100.0	-	-
안양시	-	-	-	91.5	8.5	-
평택시	-	-	-	-	-	-
시흥시	-	-	-	-	-	-
파주시	-	-	-	-	-	-
의정부시	92.3	-	7.7	92.3	-	7.7
김포시	-	-	-	-	-	-
광주시	-	-	-	100.0	-	-
광명시	100.0	-	-	100.0	-	-
군포시	-	-	-	-	-	-
하남시	-	-	-	-	-	-
오산시	-	-	-	100.0	-	-
양주시	89.5	8.0	2.5	90.0	6.2	3.8
이천시	-	-	-	100.0	-	-
구리시	-	-	-	-	-	-
안성시	-	-	-	-	-	-
포천시	-	-	-	-	-	-
의왕시	90.0	-	10.0	91.7	-	8.3
양평군	-	-	-	100.0	-	-
여주시	-	-	-	100.0	-	-
동두천시	-	-	-	-	-	-
가평군	100.0	-	-	100.0	-	-
과천시	94.6	5.4	-	100.0	-	-
연천군	-	-	-	25.0	37.5	37.5

<표 4-9> 시·군별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단위 : %)

구분	2차증진계획(1차지원계획)			3차증진계획		
	적합	부적합	미설치	적합	부적합	미설치
경기도	29.5	13.8	56.7	35.1	11.6	53.2
수원시	45.0	9.1	46.0	41.3	58.7	-
고양시	-	-	-	41.6	5.3	53.2
용인시	36.6	17.4	46.0	46.9	13.2	39.9
성남시	-	-	-	41.0	8.1	50.9
부천시	39.8	23.5	36.7	35.1	-	64.9
화성시	52.4	11.8	35.8	54.3	9.7	36.1
안산시	27.4	19.5	53.1	39.6	16.5	44.0
남양주시	23.9	14.1	62.0	45.8	5.4	48.8
안양시	-	-	-	28.3	11.6	60.1
평택시	15.6	12.5	71.9	52.6	13.4	34.0
시흥시	37.6	5.9	56.5	27.1	18.4	54.6
파주시	12.0	29.2	58.8	39.2	16.2	44.6
의정부시	23.9	18.0	58.1	24.1	18.0	57.9
김포시	32.3	16.7	51.0	42.7	11.8	45.5
광주시	27.7	5.6	66.6	27.0	0.0	73.0
광명시	42.4	13.1	44.5	52.3	12.1	35.6
군포시	46.2	19.1	34.7	55.0	16.0	29.0
하남시	27.3	15.6	57.1	21.2	13.8	65.0
오산시	-	-	-	29.8	7.4	62.7
양주시	24.4	2.8	72.8	28.8	17.1	54.2
이천시	14.9	5.8	79.3	24.3	-	75.7
구리시	-	-	-	36.1	4.3	59.6
안성시	-	-	-	42.0	12.7	45.3
포천시	11.0	4.8	84.2	18.5	11.2	70.3
의왕시	29.9	21.0	49.1	34.5	16.4	49.1
양평군	-	-	-	2.5	10.4	87.2
여주시	13.7	10.1	76.2	15.7	10.9	73.4
동두천시	39.3	0.7	60.0	48.5	0.1	51.4
가평군	27.0	19.6	53.4	27.4	6.2	66.5
과천시	23.0	21.0	56.0	40.3	7.7	52.0
연천군	-	-	-	26.0	8.1	65.9

<표 4-10> 시·군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단위 : %)

구분	2차증진계획(1차지원계획)			3차증진계획		
	적합	부적합	미설치	적합	부적합	미설치
경기도	49.5	13.8	36.6	55.7	9.8	34.5
수원시	71.0	-	29.0	71.0	29.0	-
고양시	-	-	-	57.1	0.1	42.8
용인시	49.7	11.0	39.3	50.8	11.5	37.7
성남시	-	-	-	61.8	0.8	37.4
부천시	73.0	6.3	20.7	92.3	5.1	2.6
화성시	-	-	-	80.8	3.8	15.4
안산시	38.3	29.2	32.5	39.8	13.6	46.7
남양주시	-	-	-	-	-	-
안양시	-	-	-	-	-	-
평택시	41.5	17.5	41.0	35.0	24.4	40.6
시흥시	53.8	26.9	19.3	35.7	11.4	52.9
파주시	-	-	-	-	-	-
의정부시	22.4	7.1	70.5	24.6	16.4	59.0
김포시	-	-	-	-	-	-
광주시	65.8	2.6	31.6	72.6	4.5	22.9
광명시	-	-	-	-	-	-
군포시	-	-	-	-	-	-
하남시	-	-	-	91.2	-	8.8
오산시	-	-	-	35.5	7.5	57.1
양주시	-	-	-	-	-	-
이천시	41.4	18.1	40.5	39.0	12.5	48.4
구리시	-	-	-	-	-	-
안성시	-	-	-	71.2	9.3	19.6
포천시	15.6	10.5	73.9	22.4	13.8	63.7
의왕시	-	-	-	-	-	-
양평군	-	-	-	50.0	-	50.0
여주시	48.4	17.2	34.4	44.7	3.3	52.0
동두천시	73.1	11.5	15.4	87.5	6.7	5.8
가평군	49.6	22.1	28.3	51.6	14.7	33.6
과천시	-	-	-	-	-	-
연천군	-	-	-	55.6	16.7	27.8

<표 4-11> 시·군별 도시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단위 : %)

구분	2차증진계획(1차지원계획)			3차증진계획		
	적합	부적합	미설치	적합	부적합	미설치
경기도	81.3	8.8	9.9	84.7	4.4	10.9
수원시	-	-	-	-	-	-
고양시	-	-	-	95.6	2.4	2.0
용인시	85.2	4.9	9.9	85.5	6.6	7.9
성남시	-	-	-	67.7	8.3	23.9
부천시	59.2	25.1	15.7	77.4	1.2	21.5
화성시	82.5	3.2	14.3	99.0	-	1.0
안산시	83.5	10.0	6.5	89.0	6.4	4.6
남양주시	83.2	5.8	11.0	89.8	1.2	9.0
안양시	-	-	-	71.6	3.5	24.8
평택시	76.6	7.8	15.6	82.7	9.3	8.0
시흥시	82.7	9.6	7.7	93.3	5.0	1.7
파주시	79.4	15.4	5.2	83.8	14.2	2.0
의정부시	68.9	10.7	20.4	70.3	18.5	11.2
김포시	-	-	-	-	-	-
광주시	-	-	-	93.6	2.6	3.8
광명시	88.5	5.0	6.5	79.2	2.0	18.8
군포시	77.8	6.9	15.3	83.3	1.4	15.3
하남시	-	-	-	-	-	-
오산시	-	-	-	86.3	2.8	10.9
양주시	81.4	8.7	9.9	74.0	8.9	17.1
이천시	-	-	-	88.2	2.4	9.3
구리시	-	-	-	91.7	-	8.3
안성시	-	-	-	-	-	-
포천시	-	-	-	-	-	-
의왕시	84.2	5.2	10.6	87.0	4.1	9.0
양평군	-	-	-	85.3	5.5	9.0
여주시	-	-	-	100.0	-	-
동두천시	86.4	12.6	1.0	90.8	7.5	1.7
가평군	86.6	5.8	7.6	90.7	0.4	8.9
과천시	97.2	0.8	2.0	98.1	0.9	1.0
연천군	-	-	-	47.2	-	52.8

<표 4-12> 시·군별 도로(보도)이동편의시설 현황 종합비교

구분	2차증진계획(1차지원계획)			3차증진계획		
	적합	부적합	미설치	적합	부적합	미설치
경기도	61.9	15.4	22.7	69.8	12.6	17.6
수원시	67.5	22.8	9.7	78.1	14.3	7.6
고양시	-	-	-	68.9	10.8	20.3
용인시	62.5	25.6	11.9	74.4	15.1	10.6
성남시	-	-	-	64.4	5.8	29.8
부천시	45.3	6.5	48.3	75.8	8.5	15.7
화성시	64.6	17.8	17.6	76.4	13.2	10.4
안산시	47.9	22.2	29.9	68.1	19.1	12.7
남양주시	45.0	25.6	29.4	60.1	17.1	22.8
안양시	-	-	-	70.8	10.7	18.5
평택시	88.2	9.9	1.9	87.1	3.8	9.1
시흥시	52.6	18.6	28.8	65.3	15.9	18.9
파주시	69.6	8.7	21.7	66.3	17.0	16.7
의정부시	67.5	14.1	18.4	42.7	47.5	9.7
김포시	43.4	13.5	43.1	61.7	8.5	29.8
광주시	68.3	15.3	16.4	65.6	7.1	27.3
광명시	62.4	15.9	21.6	85.4	4.5	10.9
군포시	61.3	6.9	31.8	82.2	4.2	13.6
하남시	70.6	22.7	6.7	82.3	7.7	10.0
오산시	-	-	-	70.9	4.9	24.2
양주시	70.2	4.9	24.9	74.6	3.8	21.6
이천시	48.6	31.8	19.6	69.0	2.5	28.5
구리시	-	-	-	75.4	10.0	14.6
안성시	-	-	-	59.5	7.7	32.9
포천시	70.6	4.7	24.7	67.6	4.2	28.3
의왕시	44.4	16.0	39.6	80.4	9.3	10.4
양평군	-	-	-	56.9	21.0	22.1
여주시	64.9	25.2	10.0	60.1	28.8	11.1
동두천시	82.2	9.5	8.3	68.2	15.0	16.9
가평군	49.7	6.9	43.4	68.8	16.1	15.1
과천시	60.8	18.6	20.6	71.0	12.4	16.7
연천군	-	-	-	66.6	24.7	8.7

다. 지원계획 성과 분석

- 제2차 증진계획(제1차 지원계획)과 제3차 증진계획의 조사기준이 상이하여 단순한 수치 비교로 개선여부 판단 불가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조사항목 및 방법을 통일하여 시·군간 비교 용이성 및 조사의 연속성 확보 필요
 - 시·군별 세부항목 검토 결과 기존 제2차 증진계획을 따른 경우,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따른 경우, 독자 구분한 경우 등 다양

- 2011년에 비해 2016년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적합)은 개선되었으나 목표엔 미흡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은 대체로 높아졌으나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여전히 시급단계이며, 설치율 개선에 비해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어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개선 필요

<표 4-13>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수준 정의

정의		설치율 범위 (%)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보수 및 관리)	안정화 및 유지단계	100~90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보수 및 개선 필요)	개선단계	89.9~85.0
		84.9~80.0
		79.9~75.0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음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필요함)	확충단계	74.9~70.0
		69.9~65.0
		64.9~60.0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 시급함)	미흡단계	59.9~54.0
		53.9~47.0
		46.9~40.0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매우 불편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 매우 시급함)	시급단계	39.9 이하

주)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국토교통부,2016.12)」 참고

- 이동편의시설 중 2016년 도시철도 설치율은 84.7%(개선단계), 도시철도역사 설치율은 91.9%(안정화 및 유지단계)로서 2021년의 목표 설치율 90% 달성 및 유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버스정류장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서비스수준은 각각 시급과 미흡 단계로서 지속적인 설치율 개선 필요
- 2021년 설치율 서비스수준은 버스의 경우 개선단계, 버스정류장 미흡단계, 여객자동차터미널 확충단계, 보행환경 개선단계로서 2016년에 비해 1단계씩 상승 목표

<표 4-14>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부문별 추진성과

(단위 : %)

구 분	2011년		2016년				추진성과			2021년 설치율 목표	
	설치율 현황 A	만족도 현황	설치율			만족도 현황	설치율		만족도		
			목표 B	현황 C	서비스수준		B-A	C-B			
교통 수단	버스	58.3	30.9	75	70.8	확충단계	25.8	12.5	-4.2	-5.1	79
	도시철도	92.2	34.2	100	91.9	안정화 및 유지단계	33.4	-0.3	-8.1	-0.8	90 유지
여객 시설	버스정류장	29.5	26.9	65	35.1	시급단계	24.0	5.6	-29.9	-2.9	51
	여객자동차터미널	49.5	17.3	70	55.7	미흡단계	19.3	6.2	-14.3	2.0	72
	도시철도역사	81.3	33.8	90	84.7	개선단계	35.4	3.4	-5.3	1.6	90
보행환경		61.9	27.0	73	69.8	확충단계	24.7	7.9	-3.2	-2.3	79

주1) 설치율 및 만족도 현황은 제1차 지원계획(A) 및 시·군별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C) 참고

주2) 2016년 목표(B)는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국토해양부,2012.02)」 참고

주3) 2021년 목표는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국토교통부,2016.12)」 참고

주4) 만족도 조사대상자는 교통약자로 한정

V. 제2차 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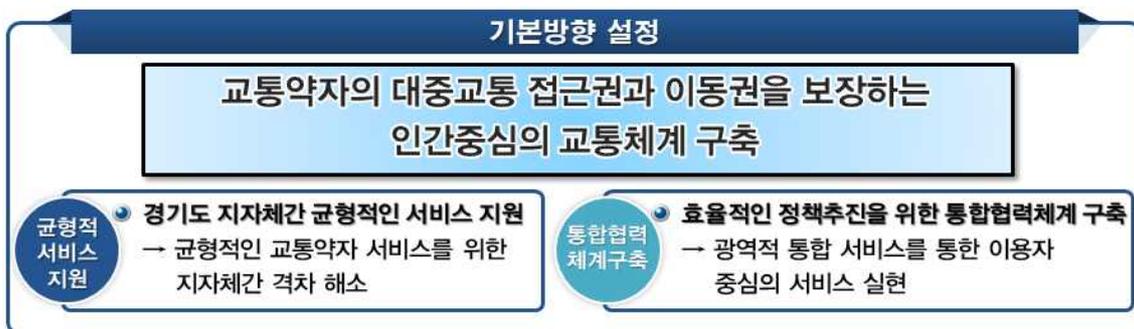
1.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2. 중점 추진과제

V. 제2차 지원계획

1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가. 기본방향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와 제1차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준용하여 정책적 연속성 확보



<그림 5-1> 기본방향 설정

나. 목표설정

지원계획 목표			
<p>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수단 및 시설지원 확대</p>	<p>특별교통수단 광역운영 개선방안 강구</p>	<p>교통약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p>	<p>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교통수단 및 저장버스 확충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간 호환성, 정보공유 등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개선 확대 광역이동을 위한 운영기준의 표준화 지표 마련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효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별 교통약자시설(터미널, 정류장, 역사 등) 사전검토 및 유지관리 강화 교통약자시설 확충유도를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에 대한 도민 홍보 및 업무관계자 교육 강화

<그림 5-2> 목표설정

2 중점 추진과제

가. 특별교통수단 확충

1.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및 계획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2019. 7. 5)에 따라 이용범위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법정대수는 해당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기준 강화

<표 5-1>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 장애	○	△	
	시각 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 장애	△		

주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참고

주2)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

□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42%(2019.12 기준)로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 2017~2021, 국토교통부, 2019.12」에서 제시한 2021년 목표 보급률 84%를 모두 만족

<표 5-2>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계획

구분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수	법정대수 (대)	운영대수 (대)	보급률 현황 (%)	지자체별 계획 (2020~2024년)	
					증차계획(대)	대폐차계획(대)
경기도	112,966	753	1,071	142	123	278
수원시	8,676	58	90	155	-	32
고양시	8,858	59	86	146	-	41
용인시	7,231	48	72	150	-	-
성남시	7,869	52	80	154	-	-
부천시	5,649	38	64	168	23	42
화성시	5,331	36	48	133	26	27
안산시	6,178	41	61	149	-	23
남양주시	6,213	41	42	102	15	-
안양시	4,168	28	38	136	-	1
평택시	4,232	28	44	157	5	27
시흥시	3,445	23	32	139	-	24
파주시	4,264	29	36	124	-	-
의정부시	5,221	35	32	91	7	12
김포시	4,099	27	32	119	8	4
광주시	2,890	19	29	153	10	-
광명시	2,737	18	32	178	-	2
군포시	2,340	16	22	138	5	12
하남시	2,064	14	18	129	2	1
오산시	1,651	11	17	155	-	-
양주시	2,863	19	21	111	5	5
이천시	2,590	17	24	141	-	-
구리시	1,742	12	17	142	1	-
안성시	2,163	14	19	136	-	-
포천시	2,054	14	17	121	5	17
의왕시	1,423	9	11	122	-	-
양평군	1,777	12	20	167	4	-
여주시	1,493	10	18	180	7	-
동두천시	1,371	9	14	156	-	6
가평군	1,217	8	16	200	-	-
과천시	467	3	6	200	-	-
연천군	690	5	13	260	-	2

주1) 보행장애가 심한 장애인수는 '보행상 장애 표준 지표'의 심한 장애인 경우로 산정 (2018년 기준)

주2) 운영대수 및 계획은 시·군별 내부자료(2019.12 기준)

- 시·군별 증차 및 대폐차 계획을 반영한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는 2020년 1,131대에서 2024년 1,194대로 2019년 기준 법정대수의 150%(1,130대)를 상회
- 31개 지자체중 2019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100% 미만이었던 의정부시(보급률 91%)도 2020년 증차계획을 반영하면 보급률 111%로서 법정대수 만족 예상

<표 5-3>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전망(2020~2024년)

(단위 : 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대수 (법정대수)	1,071 (753)	1,131	1,159	1,170	1,181	1,194
증차대수	-	60	28	11	11	13
대폐차대수	-	58	59	56	45	60
전년대비 증감	-	△60	△28	△11	△11	△13

□ 파주시 맞춤형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행개시(2019.08)

- 출·도착지가 같은 경우 또는 출발지는 다르나 도착지가 같은 3인 이하의 휠체어 장애인들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제공으로 이동편의 및 효율 제고
 - 운행대수 : 1대
 - 탑승인원 : 휠체어 3석, 가족 및 보호자 5석(총 8석)
 - 운행시간 : 평일 9~18시 운행(관외운행 가능), 사전 예약
 - 이용요금 : 1인당 500원(편도), 왕복 가능, 관내·외 요금 동일

2.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비의 일부 지원

<표 5-4>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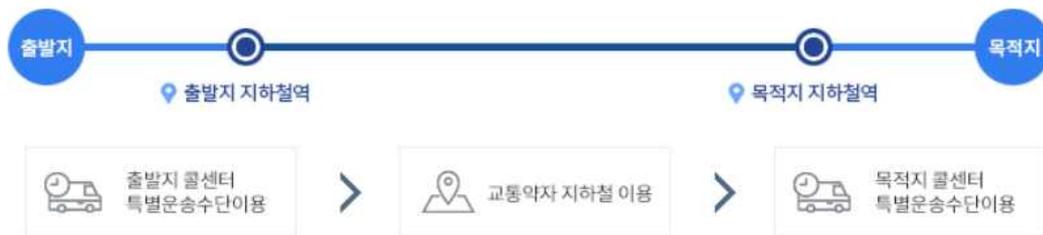
항 목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내 시·군이 도입·운영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 (지원기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용은 도비 30~70%, 시·군비 30~70%로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보조, 운영비용은 도비 10~20%, 시·군비 80~90%이며 기본 보조율 10%에 광역이동 기준을 만족하는 시·군에 대해 10%를 추가 보조
 - 광역이동 기준은 버스수준 요금, 24시간 운영, 즉시콜 제공, 수도권 운행 등 4가지이며, 모두 만족해야 운영비용 10% 추가 보조
 - 해마다 유동적이긴 하나 도입비용은 대당 43백만원(카니발, 스타렉스 기준), 운영비용은 연간 대당 약 80백만원

나.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개선

1.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경기도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11월부터 서비스 제공 시작
 - IVR(음성예약시스템), 홈페이지(ggsts.gg.go.kr),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 접수 및 취소 가능
 - 홈페이지에서 각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정보 연계
 - 광역이동지원시스템에 접수 시, 지하철연계 운행
 - 목적지가 타지역인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여 목적지 부근 지하철역까지 이동 후 목적지 지하철역에 대기 중인 차량으로 목적지 도착



<그림 5-3> 특별교통수단 이용 광역접수시 연계방법

- 2019년 12월 기준 충청북도를 제외한 8개 광역지자체에서 광역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중
 - 각 시·군별 이동지원센터는 이용대상자 등록, 차량운행 및 관리 담당,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신청 및 배차
 - 관외 이동 시 주로 병원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예약제 실시
 - 전라북도의 경우, 타지역 거주자(심한 장애인)나 일시적 방문자에 대해서도 사전 신청 시(1회성) 이용 가능

<표 5-5> 광역지자체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운영현황

구분	현황	비고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31개 시·군별 이동지원센터로 연결하는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시스템 운영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앱 접수 시군 이동지원센터별 운행시간, 요금 상이	ggsts.gg.go.kr 1666-0420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주)케이티스 위탁 차량운행관리 : 18개 시·군 차량보유대수 : 110대(2018년) 광역콜 관제인력 : 16명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24시간 운행(16개 시·군) 평일 07~22시, 주말·공휴일 09~18시 운행 (화천군, 인제군) 전화, 문자, 홈페이지, 모바일앱 접수 운행요금 통합 4km 1,100원, 추가1km 100원	call.gwd.go.kr 1577-2014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여부 문의중(1/10 통화예정) 차량운행관리: 14개 시·군 차량운행대수 : 120대(2018년) 광역콜 관제인력 : 20명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운행시간 시·군별 상이 전화, 문자 접수 운행요금 시·군별 상이	16445588.or.kr 1644-5588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주)케이티스 위탁 차량운행관리 : 14개 시·군 운행대수 : 149대(2018년) 광역콜 관제인력 : 24명 연중무휴, 24시간 접수·운행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앱 접수 14개 시·군→8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내외로 운행요금 통합 (광주, 대전 권역에 포함, 권외요금 적용) 권내 2km 700원, 추가1km 100원(2천원 이내) 권외 2km 700원, 추가700m 100원 전국 이용가능(평일, 사전예약)	www.0632270002.com 063-227-0002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재)전남복지재단 위탁 차량운행관리 : 22개 시·군 운행대수 : 125대(2018년) 광역콜 관제인력 : 18명	www.doumcall.kr 1899-1110

<표계속>

구분	현황	비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연중무휴, 24시간 접수 운영시간 시·군별상이 전화, 문자, 모바일앱 접수 현재 시·군별 요금 상이 기본2km 500원, 추가1km 100원으로 통합중 (일부 시군 완료)	www.doumcall.kr 1899-1110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위탁 차량운행관리 : 16개 시·군 운영대수 : 159대(2018년) 광역콜 관제인력 : 17명 연중무휴, 08~21시 접수 운영시간 시·군별 상이 전화, 문자, 홈페이지, 모바일앱 접수 운영요금 시·군별 상이	www.brncall.co.kr 1899-7770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위탁 차량운행관리 : 18개 시·군 운영대수 : 328대(2018년) 관제인력 : 26명 연중무휴 접수 및 운영 전화로만 접수, 1일전 사전예약 관내 및 경남 전역 관내 시내버스요금의 2배이내	1566-4488

주1) 각 센터별 홈페이지 게시자료(2019.12 기준)

주2)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2019.05

2.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경기도 31개 시·군은 이동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 중이며, 이용 대상자, 이용시간(접수 및 운영), 접수방식, 운행지역, 이용요금(관내, 관외, 기타) 등이 상이

<표 5-6>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구분		운영현황
운영대수		· 경기도 전체 시·군 법정기준 142% 운영 중 (2019년말 기준)
이용대상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유동적
이용시간		· 24시간 접수·운영 : 10개 시·군 - 수원, 고양, 성남, 부천, 화성, 안산, 김포, 오산, 포천, 연천 · 제한 접수·24시간 운영 : 9개 시·군 - 용인,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동두천 · 제한 접수·운영 : 12개 시·군 - 안양, 시흥,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가평, 과천
접수방식		· 모든 시·군 전화 접수 시행, 추가로 문자,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접수 시행 중 - 문자(8개 시·군) : 수원, 용인, 광명, 구리, 안성, 동두천, 과천, 연천 - 홈페이지(13개 시·군) :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연천 - 어플(13개 시·군) :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김포, 광주,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여주, 과천, 연천 · 예약불가 3개 시(고양, 부천, 김포), 평택 즉시접수 불가
운영지역		· 인접생활권 운행 : 6개 시(부천, 광명, 하남, 양주, 의왕, 과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7개 시·군 · 충청·강원 포함(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 8개 시·군(평택,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이용요금	관내	· 무료(1개) : 과천 · 기본요금 부과(9개 시·군) : 1,000~1,500원의 기본요금만 징수 - 수원, 안산,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오산, 의왕, 동두천 · 기본+추가요금 부과(21개 시·군) - 기본요금 1,000~1,500원, 추가요금은 거리별로 다양한 요금 징수
	관외	· 관내 기본요금에 관외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시·군은 9개, 관외요금 할증 도입 시·군은 5개로 총 14개 시·군이 할증 적용 · 16개 시·군 관내요금 동일(추가요금의 할증 없음) · 과천시 무료
	기타	· 30개 시·군 통행료 및 주차료 이용자 부담 - 통행료 미부담(용인), 주차료 미부담(고양) · 회차(대기 후 왕복운행) 가능 : 22개 시·군 - 회차불가(9개) : 고양, 성남, 남양주, 김포, 광주, 광명, 하남, 동두천, 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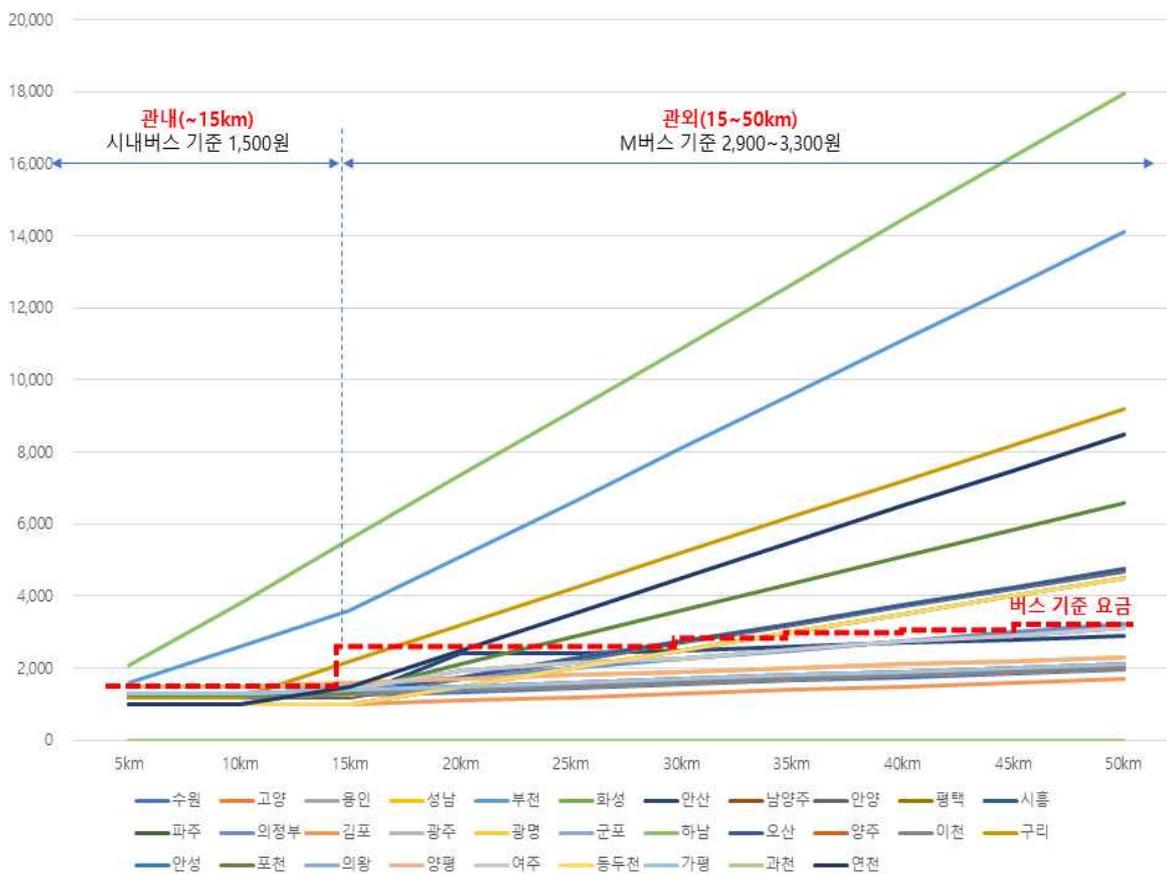
주) 시·군별 내부자료(2019.12 기준)

<표 5-7>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운행요금 현황

구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통행료 부담 주체	주차료 부담 주체
	기본요금 (원)	추가요금 (원)	기본요금 (원)	추가요금 (원)	기본요금 (원)	추가요금 (원)	기본요금 (원)	추가요금 (원)		
수원시	관내	1,250			-	-	5km	100	이용자	이용자
고양시	10km	1,300	5km	100	관내요금과동일				이용자	해당 없음
용인시	10km	1,200	5km	100	-	-	-	-	센터	이용자
성남시	10km	1,500	5km	100	시계 외 할증폐지(19.12.01)				이용자	지자체
부천시	2km	1,000	1km	200	-	-	1km	300	이용자	이용자
화성시	10km	1,200	5km	100	관내요금과동일				이용자	이용자
안산시	관내	1,200		없음	10km	1200	5km	100	이용자	이용자
남양주시	10km	1,300	5km	100	관내요금과동일				이용자 (편도)	이용자
안양시	관내	1,200		없음	-	-	1km	100	이용자	이용자
평택시	10km	1,200	5km	100	관내요금과동일				지자체	이용자
시흥시	10km	1,200	5km	100	관외 최고요금 6,000원				이용자	이용자
파주시	관내	1,000		없음	-	-	1km	100	이용자	이용자
의정부시	10km	1,000	1km	100	-	-	1km	50	이용자	이용자
김포시	관내	1,000		없음	-	-	5km	100	지자체	이용자
광주시	10km	1,200	5km	100	관내요금과동일				이용자	이용자
광명시	관내	1,250		없음	-	-	1km	100	이용자	이용자
군포시	10km	1,200	5km	100	-	-	-	-	이용자	이용자
하남시	2km	1,000	113m 20초	40 40	관내요금과동일				이용자	이용자
오산시	관내	1,300		없음	-	-	1km	100	이용자	이용자
양주시	10km	1,200	5km	100	관내요금과동일				이용자	이용자
이천시	10km	1,200	5km	100	-	-	-	-	이용자	이용자
구리시	10km	1,200	1km	200	관내요금과동일				이용자	이용자
안성시	10km	1,300	3km	100	20%할증				이용자	이용자
포천시	10km	1,250	5km	100	-	-	1km	150	이용자	이용자
의왕시	편도	1,500		없음	-	-	1km	200	이용자	사용자
양평군	10km	1,500	5km	100	관내요금과동일				이용자	이용자
여주시	10km	1,300	3km	100	20%할증				이용자	이용자
동두천시	관내	1,000		없음	-	-	1km	100	이용자	이용자
가평군	10km	1,300	5km	100	관내요금과동일				이용자	이용자
과천시	무료			없음	관내요금과동일				이용자	이용자
연천군	10km	1,000	1km	100	-	-	1km	200	이용자	이용자

주) 시·군별 내부자료(2019.12 기준)

-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해 50km 이동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11개 시·군이 M버스(광역급행버스) 요금 3,300원 초과
 - 11개 시·군 : 부천시, 안양시, 파주시, 광명시, 하남시, 오산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동두천시, 연천군
 - 관내는 15km 이내로, 관외는 15~50km로 설정하였으며 M버스 기본 요금은 2,900원(30km이내), 5km당 100원 추가



<그림 5-4>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요금 비교

3. 광역이동지원 개선안

- (동질의 서비스 제공) 시·군별로 상이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운행지역, 이용요금 등을 통일 혹은 간소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광역이동의 편의 도모

- (운영지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유도
 - 현행 운영비의 10~2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운영비 일부를 특별교통수단 광고를 활용하여 보전

- (DB 구축 및 활용)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교통약자) 및 현황자료 DB구축으로 통합관리 도모
 - 실시간 배차 및 차량위치 공유로 관외 목적지로 이동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관외 접수 및 승차가 가능토록 하여 운영 효율 증대
 - 출발지 이동지원센터에서 관외이용 발생시 실시간 배차현황을 DB에 등록하여 목적지 이동지원센터로 도착장소 및 시간 등 자동 알림(편도의 경우에만, 왕복은 통보 불필요)
 - 목적지 이동지원센터는 출발지로의 이용수요가 있을 시 출발지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내용을 통보하고 차량 요청
 - 출발지 이동지원센터는 해당 관외운행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목적지에서의 출발시간 및 장소, 도착장소 등을 지시하여 이용수요 처리

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표준화

-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표 설정 및 표준화를 통해 각 시·군이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기준은 운행대수(법정대수), 이용대상자, 운행지역, 운행시간, 이용요금, 관제시스템, 접수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경기도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이동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설정

<표 5-8>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구분	기준	비고
운행대수	법정대수의 150% 이상 확보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용대상자	법률에 근거한 대상자 기준 준수	이용자 거주지에 대한 차별 금지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 * 수도권외 시·도와 시계를 맞닿은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타시·도 포함	향후 이용목적에 따른 운행지역 제한 불가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기본요금 1,500원/10km 이하 추가요금 100원/5km 이하
이용요금	대중교통요금 이하	
관제시스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연계	추후 시·군 관제시스템 교체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활용
접수방식	다양한 접수방식 구축 (전화, 온라인, 어플 등)	온라인, 어플 접수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활용

주) 법정대수 150%는 경기도 정책목표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설정

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 및 바우처택시 등) 확대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없는 차량과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구분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 임차택시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 바우처택시

<표 5-9>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지원 관련 법령

항 목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p>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p> <p>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경기도내 지자체에서는 임차택시를 전용계약과 비전용계약방식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 전용계약형 임차택시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나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차량으로 운영

- 3개 시·군 운영 중(총 53대) : 수원시(45대), 고양시(5대), 양평군(3대)

- 도입예정(2020~2024년) : 고양시(20대), 이천시(5대), 여주시(5대)

* 서울시 : 장애인콜택시인 개인택시(일반승용) 50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에서 시각장애인의 생활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콜 158대 운영중 (2019년 기준)

- 비전용 계약형 임차택시는 교통약자 이동수요 처리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 4개 시·군 운영중(총 189대) : 용인시(60대), 화성시(50대), 안산시(59대), 의정부시(20대)
 - 도입예정(2020~2024년) : 화성시(150대), 시흥시(150대), 파주시(19대), 군포시(40대)

□ 바우처 택시는 일반택시에게 장애인 이용실적에 따라 운행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행요금의 일정비율을 시·군이 지급

- 경기도내 바우처택시는 고양시에서 운영중
 - 고양시는 월10만원, 1회 1만원 한도로 일반택시요금의 70% 감면
 - * 서울시 :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접수, 콜센터이용(나비콜, 엔콜), 일 4회, 본인부담 25%, 회당 3만원 한도, 최대 월 40회 한도(2019년 기준)

<표 5-10>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비교

구분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전용계약형	비전용계약형	
통제권	이동지원센터	사업자	사업자
요금수준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특별교통수단과 동일	택시요금의 일정비율 바우처로 보조
장점	안정적인 배차·운영	일반인대상 영업가능 운영비 절감	일반택시 활용 운영비 절감효과 큼
단점	일반인대상 영업불가	장애인 배차 비선호	*비장애인 편법이용 가능성 존재 *임차택시에 비해 이용자 부담 큼
운영사례	수원시, 고양시, 양평군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정부시	고양시

주) 시·군별 내부자료(2019.12 기준)

- (비휠체어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 분산 필요) 도내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2019년 기준)에 따르면 비휠체어 이용자 비율은 58.2%이며, 보행상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이용 점유율이 59.2%에 불과
- 특별교통수단의 비휠체어 이용 점유율 상위 지자체는 연천군(94%), 안성시(89%), 이천시(82%), 화성시(76%), 평택시(74%), 가평군(71%) 순으로 행정구역이 넓은 시·군의 비휠체어 이용 점유율이 높은 편
 - 휠체어 탑승이 불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택시를 확보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필요
 - 2017년 7개 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건수 4,915,692회 중 일반택시(바우처) 이용은 2,186,460회로 44.5% 차지

<표 5-11> 7개 광역시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운행횟수 분석

(단위 : 회,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율
전체	2,846,471	3,797,531	4,159,256	4,305,482	4,915,692	15%
특별교통수단	2,096,095	2,295,582	2,516,186	2,587,905	2,729,232	7%
바우처택시	750,376	1,501,949	1,643,070	1,717,577	2,186,460	31%

주)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발표자료(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2018.08)

-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 임차택시(전용계약형, 비전용계약형)는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 안정성 및 요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나, 시·군의 비용부담에 따라 확장성에 한계가 존재, 운행보조금 지급 방식의 바우처택시 확대는 운영기관의 비용절감 및 공급확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나 편법이용 등 도덕적 해이 우려

- 지자체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를 분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용자 형평성을 위해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 모두 특별교통수단 수준의 요금 부과 권장
 - 시·군별 특성에 따라 임차택시 기준(특별교통수단 수준)의 요금수준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감면비율(지원 비율) 산정하여 추진
 - * 경기복지택시(舊 따복택시)는 사군별로 택시이용요금 외 추가요금(인센티브) 제공사례 있음
- (무료 셔틀버스(복지버스) 도입·운영) 휠체어 탑승시설은 불필요하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및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정기적인 노선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도입
 - 교통약자가 다니기 힘든 지역이거나 수요가 많은 노선을 개발하여 비휠체어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 분산
 - 일부 장애인 시설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중이나 해당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통약자의 경우 이용 불가능
 - * 서울시 자치구별 무료 복지버스 운행중 : 관내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와 영·유아 및 교통약자 동반 보호자 1명, 신분증 제시
 - **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는 서울시 자치구(차량대수) : 종로구(2), 중구(1), 용산구(6), 성동구(2), 광진구(1), 동대문구(1), 중랑구(2), 성북구(2), 강북구(1), 도봉구(2), 노원구(2), 은평구(2), 서대문구(2), 마포구(1), 강서구(2), 금천구(1), 영등포구(1), 동작구(4), 관악구(1), 강남구(2) 등(2020.02 기준)
 - *** 동작구 무료 셔틀버스(15인승) 운영비 83백만원/대·년(2019년 기준)

<표 5-12>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2019년)

구분	서비스건수(건)			점유율(%)	
	계	휠체어	비휠체어	휠체어	비휠체어
경기도	2,286,809	955,415	1,331,394	41.8	58.2
수원시	518,046	158,727	359,319	30.6	69.4
고양시	148,761	65,077	83,684	43.7	56.3
용인시	140,451	64,490	75,961	45.9	54.1
성남시	250,555	109,882	140,673	43.9	56.1
부천시	187,832	157,862	29,970	84.0	16.0
화성시	80,431	19,582	60,849	24.3	75.7
안산시	179,978	63,291	116,687	35.2	64.8
남양주시	38,945	16,696	22,249	42.9	57.1
안양시	67,861	32,278	35,583	47.6	52.4
평택시	70,580	18,551	52,029	26.3	73.7
시흥시	36,031	15,695	20,336	43.6	56.4
파주시	46,317	16,969	29,348	36.6	63.4
의정부시	66,458	25,277	41,181	38.0	62.0
김포시	52,226	26,289	25,937	50.3	49.7
광주시	35,342	13,256	22,086	37.5	62.5
광명시	53,464	32,472	20,992	60.7	39.3
군포시	37,869	15,345	22,524	40.5	59.5
하남시	21,932	12,929	9,003	59.0	41.0
오산시	18,989	5,825	13,164	30.7	69.3
양주시	31,661	12,078	19,583	38.1	61.9
이천시	32,106	5,863	26,243	18.3	81.7
구리시	27,213	18,530	8,683	68.1	31.9
안성시	13,760	1,514	12,246	11.0	89.0
포천시	21,645	10,405	11,240	48.1	51.9
의왕시	14,269	6,258	8,011	43.9	56.1
양평군	31,855	10,900	20,955	34.2	65.8
여주시	19,031	11,344	7,687	59.6	40.4
동두천시	-	-	-	-	-
가평군	11,777	3,395	8,382	28.8	71.2
과천시	7,975	3,230	4,745	40.5	59.5
연천군	23,449	1,405	22,044	6.0	94.0

주1) 시·군별 내부자료(2019.12)

주2) 동두천시 자료없음

<표 5-13> 시·군별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2019년)

(단위 : 건)

구분	합계	보행상 장애인				타장애 유형	기타 (노약자등)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경기도	2,350,179 (100.0%)	582,082 (24.8%)	538,021 (22.9%)	233,126 (9.9%)	38,679 (1.6%)	658,172 (28.0%)	300,099 (12.8%)
수원시	518,046	128,236	99,420	52,240	15,307	156,913	65,930
고양시	148,761	29,119	33,790	16,056	409	66,235	3,152
용인시	140,451	32,860	47,545	13,124	1,036	29,133	16,753
성남시	250,555	57,096	66,211	23,054	1,160	78,784	24,250
부천시	187,832	49,232	48,992	20,125	-	51,127	18,356
화성시	80,431	19,582	17,616	10,733	1,315	22,526	8,659
안산시	179,978	33,594	39,408	28,922	2,066	63,446	12,542
남양주시	38,945	6,174	9,310	6,255	441	10,549	6,216
안양시	67,861	8,584	19,134	4,165	627	28,117	7,234
평택시	70,580	17,619	17,167	9,261	1,394	23,811	1,328
시흥시	36,031	9,405	10,711	3,627	376	11,284	628
파주시	46,317	8,645	9,728	3,590	295	14,153	9,906
의정부시	132,914	66,458	14,029	17,798	12,221	483	21,925
김포시	52,226	13,069	13,547	4,626	207	17,214	3,563
광주시	35,342	6,509	12,188	1,543	675	8,910	5,517
광명시	53,464	31,291	15,456	123	5	-	6,589
군포시	37,869	6,692	7,382	2,011	289	12,028	9,467
하남시	21,932	6,193	7,688	907	-	4,843	2,301
오산시	18,989	2,309	5,911	901	-	6,424	3,444
양주시	31,661	6,839	6,026	4,302	132	8,534	5,828
이천시	32,106	11,230	6,019	2,200	80	4,551	8,026
구리시	27,213	5,246	6,068	1,988	87	9,749	4,075
안성시	13,760	1,953	1,514	702	-	2,119	7,472
포천시	21,645	4,531	4,452	1,355	310	10,555	442
의왕시	14,269	2,228	3,174	709	-	7,987	171
양평군	31,964	8,020	6,720	1,054	109	885	15,176
여주시	19,031	4,849	3,793	1,394	59	2,862	6,074
동두천시	-	-	-	-	-	-	-
가평군	8,582	526	805	202	2	3,485	3,562
과천시	7,975	2,727	3,461	7	56	968	756
연천군	23,449	1,266	756	152	21	497	20,757

주1) 시·군별 내부자료(2019.12)

주2) 동두천시 자료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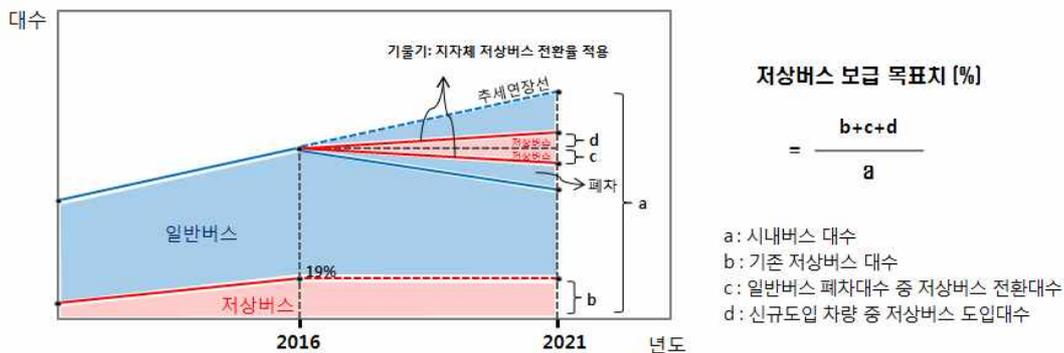
<표 5-14>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외 서비스 운영현황 및 도입계획

구분	현황(2019.12)					계획(2020~2024)			
	합계	임차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차량	기타	계	임차택시		비고
		전용 계약	비전용 계약				전용 계약	비전용 계약	
경기도	283	53	189	32	9	389	30	359	
수원시	45	45	-	-	-	-	-	-	
고양시	11	5	-	6		20	20	-	바우처택시 운영중 : 장애인택시요금 지원사업시행중 일반택시요금70%, (월10만원) 1회 1만원 한도
용인시	60	-	60	-	-	-	-	-	
성남시	-	-	-	-	-	-	-	-	
부천시	-	-	-	-	-	-	-	-	
화성시	59	-	50	9	-	150	-	150	
안산시	59	-	59	-	-	-	-	-	
남양주시	-	-	-	-	-	-	-	-	특별교통수단 57대 확보 이후 검토
안양시	-	-	-	-	-	-	-	-	
평택시	-	-	-	-	-	-	-	-	
시흥시	-	-	-	-	-	150	-	150	
파주시	-	-	-	-	-	19	-	19	
의정부시	20	-	20	-	-	-	-	-	
김포시	-	-	-	-	-	-	-	-	
광주시	-	-	-	-	-	-	-	-	
광명시	-	-	-	-	-	-	-	-	
군포시	2	-	-	-	2 (임산부 전용)	40	-	40	
하남시	3	-	-	3	-	-	-	-	
오산시	-	-	-	-	-	-	-	-	
양주시	-	-	-	-	-	-	-	-	
이천시	4	-	-	2	2	5	5	-	
구리시	4	-	-	4	-	-	-	-	
안성시	3	-	-	1	2	-	-	-	
포천시	-	-	-	-	-	-	-	-	
의왕시	-	-	-	-	-	-	-	-	
양평군	11	3	-	5	3	-	-	-	
여주시	-	-	-	-	-	5	5	-	
동두천시	-	-	-	-	-	-	-	-	
가평군	-	-	-	-	-	-	-	-	
과천시	2	-	-	2	-	-	-	-	
연천군	-	-	-	-	-	-	-	-	

주) 시·군별 내부자료(2019.12 기준)

마. 저상버스 확충

- 경기도 2019년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대비 저상버스 도입율은 13.4%에 불과
 - 저상버스 대수는 2013년 1,107대(도입율 14.2%)에서 2019년 1,436대로 329대 증가하였으나 도입율은 제자리 수준
-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서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지를 고려하여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를 32%로 제시



<그림 5-5>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 산정 방법론

-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서는 경기도 저상버스 평균 전환율 40.5%을 고려하여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을 26.3%로 예측하고 있으며 목표치(32%) 미달 예상
- 이에 따라 저상버스 전환율 제고 방안과 도로여건, 버스이용자 수요 부족 등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중형 저상버스 도입 필요

□ 일반형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의 도입을 지원

-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대비 유지비용이 높아 운영기관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상버스 폐차시 저상버스로 계속 도입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실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마련

* 서울시 기준 저상버스 추가운영비는 연간 약 10백만원/대

**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 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업체별 저상버스 보유율(30점), 당해연도 자부담 가능대수 대비 도입대수(40점)

$$\frac{\text{보조금미지원 자율도입대수} \times 0.6 + \text{시비보조도입대수} \times 0.4}{\text{차량9년이상대수} - \text{국고보조금 배정대수}} \times 40$$

보조금 배정량 미이행시 대당 5점 감점

- 31개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계획(증차 및 대폐차)을 감안한 2024년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은 34.9%

-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 2016.12)」에서 제시한 2021년 목표치 32.0%를 2024년에 이르러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의 계획에 기반한 현실적인 목표임을 감안하여 그대로 반영

- 중형 저상버스 도입 : 6개 시·군(수원, 부천, 파주, 광명, 군포, 포천)

<표 5-15> 장래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 예상

구분	2021 ¹⁾ 목표	2019 현황	예상 ²⁾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급률 (%)	32.0 ²⁾	13.4	21.2	24.6	27.9	31.4	34.9	
저상버스 대수	-	1,441	2,263	2,632	2,986	3,361	3,737	

주1)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 2016.12)」의 목표치

주2) 2020~2024년 보급률은 2019년 전체 시내버스 대수 대비 목표연도별 시·군별 저상버스 증차 및 대폐차계획 반영결과(일반 저상버스)

<표 5-16> 시·군별 저상버스 현황 및 증차·대폐차 계획(2020~2024년)

(단위 : 대, %)

구분	현황(2019.12)			저상버스 증차계획		일반저상버스 대폐차계획		비고
	시내 버스	저상 버스	보급률	일반	중형	대차	폐차	
경기도	10,723	1,441	13.4	1,570	113	865	252	
수원시	1,180	313	26.5	256	9	38	112	
고양시	591	49	8.3	-	-	278	-	'21~'24 계획없음
용인시	378	22	5.8	-	-	32	-	
성남시	725	124	17.1	368	-	81	33	
부천시	860	251	29.2	607	56	87	-	
화성시	455	33	7.3	4	-	-	-	
안산시	633	39	6.2	30	-	25	-	
남양주시	718	59	8.2	-	-	5	-	
안양시	634	75	11.8	60	-	30	30	
평택시	286	25	8.7	3	-	5	5	'21~'24 계획없음
시흥시	263	17	6.5	30	-	-	8	
파주시	367	73	19.9	20	6	-	-	
의정부시	313	59	18.8	7	-	54	54	
김포시	703	117	16.6	2	-	9	-	
광주시	1,052	89	8.5	-	-	-	-	
광명시	282	2	0.7	78	35	133	-	
군포시	4	-	-	-	2	-	-	
하남시	290	14	4.8	-	-	-	-	
오산시	93	7	7.5	16	-	69	-	
양주시	113	23	20.4	75	-	3	3	
이천시	99	10	10.1	-	-	-	-	
구리시	138	17	12.3	-	-	-	-	
안성시	101	4	4.0	1	-	-	-	
포천시	209	18	8.6	4	5	7	7	
의왕시	-	-	-	-	-	-	-	
양평군	44	-	-	-	-	-	-	
여주시	48	1	2.1	9	-	9	-	
동두천시	49	-	-	-	-	-	-	
가평군	67	-	-	-	-	-	-	
과천시	8	-	-	-	-	-	-	
연천군	20	-	-	-	-	-	-	

주1) 시·군별 내부자료(2019.12 기준)

주2) 시내버스는 농어촌버스 포함, 마을버스는 제외

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고도화

-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면검토, 현장기술지원 포함) 시작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전철, 철도, 여객선/항공기 등의 안내 및 내부시설), 여객시설(버스정류장, 여객터미널,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여객선 및 공항터미널), 도로(도로, 지하도, 육교 등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 *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건축물 내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도면 검토 및 설치, 현장점검, 설치매뉴얼 개발 등을 지원, 2004년 개소, 현재 경기도 및 31개 시·군 기술지원센터 운영중

<표 5-17>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업무현황

구분	세부업무내용	비고
종합상담센터 민원업무	편의시설 관련 문의 및 민원 제기(시설주, 관계기관, 이용장애인 등) → 법률 근거로 상담, 검토, 확인, 자료제공 등의 업무수행	연중 수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	도로, 여객시설 설계도면에 대한 관련 지침 및 법적 기준 검토 설계도면 적정 반영 및 법적기준 적합 여부 현장점검	도 및 시·군의 주무부서와 업무연계
교육추진	대상 : - 교통사업자 및 실무자(설계 및 시공감리) - 교통약자 이동편의관련 공무원(건설, 복지, 교통 등)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유관기관(LH, 경기도 시공사 등) 강사 : 전문강사 및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장 내용 : - BF인증, 도시철도 설계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교육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 조사원 교육
연구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표준 매뉴얼 제작 이동편의시설 법적기준 교육용 영상 제작	2018년 개정1판 2019년 개정2판

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내부자료(2019.12 기준)

<표 5-18>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실적현황

사업년도		2015년 (5~12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계		348	559	595	643	734	2,879	
종합 상담실	구두 상담	기술상담	85	208	253	301	292	1,139
		대면상담	13	44	35	44	24	160
		기타상담	6	36	61	58	26	187
	도면 검토	여객시설	21	24	38	14	18	115
		도로	18	19	63	79	131	310
		기타	9	-	25	11	-	45
	현장 점검	여객시설	164	15	14	53	23	269
		도로	7	164	53	34	127	385
	교육, 홍보		25	49	53	49	93	269

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내부자료(2019.12 기준)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심사대상의 확대와 심사에 대한 의무화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심사대상의 확대) 현행 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의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을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한정하여 규정
 - 보행환경과 관련된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확대적용 필요
- (의무의 명확화 및 전문성 강화) 심사의 주체가 교통행정기관만으로 한정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 미흡
 - 심사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가능 규정의 부재로, 형식적 절차로 치부되는 경우 다수 발생 (의무사항으로 미인지)
 - 기준적합성 판단의 전문성 결여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률 저조-

* 도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실적 결과, 일부 시군에서만 제도가 운영 중이며 그마저도 일부 시설만 국한적으로 시행

** 용인시의 도시계획도로 준공사업('17~'18년) 실태조사 결과, 이동편의시설의 적합률이 60%에 불과

<표 5-19>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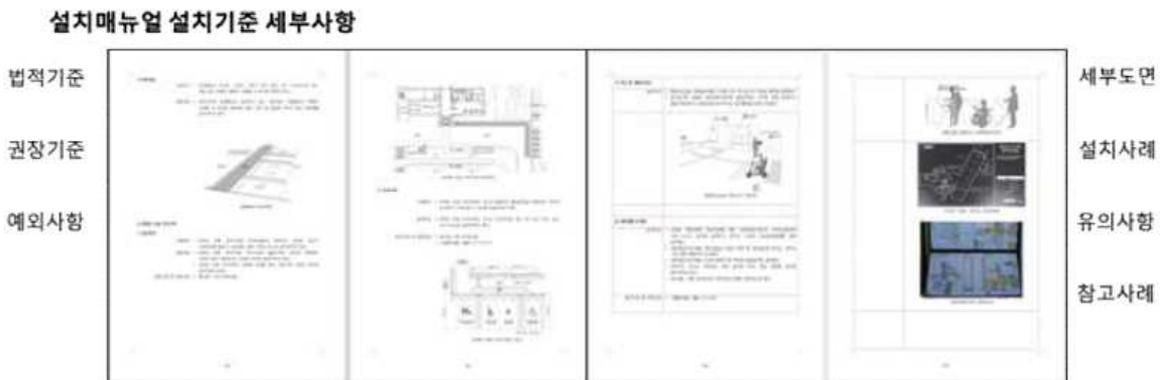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p>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대한 조례	<p>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p> <p>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경기도 내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해당 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 기술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점검, 광역기능 및 전문성 강화, 매뉴얼 개선 등이 필요

-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사전·사후점검 강화) 경기도내 이동편의시설,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설계부터 시공 완료 시까지 기술지원을 받아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관리
- (광역기능 강화)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을 위해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광역적 지원
 - 기술요원 총원(도비 보조금 증액) 및 도비 매칭 시범사업 진행(인구 50만 이상 시·군 대상, 도비:시·군비=30:70)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시·군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 교육 횟수 증대 또는 교육 참여대상 확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개선) 담당 공무원 및 시설물 설치·관리자 등이 실제 다양한 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발간·배포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내용 구성의 세분화 필요
 - 매뉴얼 개선을 통해 이동편의시설 설치수준 향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기준적합률 개선 가능
 - 기존 설치기준, 상세도, 사례(사진)의 3단 구성에서 기준(법적기준, 권장기준, 예외사항)과 설치상세(세부도면, 설치사례, 유의사항, 참고사례)로 세분화하여 한눈에 이해 가능토록 구성
-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개선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12.
- **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사례 및 도면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획득 시설물을 기준으로 제시



<그림 5-6>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개선안 참고

사.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1.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제고

- 통상적으로 교통약자를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는 장애인과 더불어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와 영유아동반자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 포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로 인한 혜택을 나와 가족이 누릴 수 있음을 상기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심 유도

<표 5-20> 인식제고 홍보방안

매체	홍보방법	대상	기간
지역방송 (라디오, 신문 포함)	교통약자의 범위와 이동편의 관련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뉴스시간에 홍보	도민	필요시
홈페이지	경기도 및 각지자체(유관기관 포함),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이용방법 홍보	"	상시
ITS시스템	도로전광표지(VMS), 정류장 안내단말기, 버스내 승객·운전자용 안내단말기에 문자, 그래픽, 안내방송 삽입	"	"
동영상	국토교통부 등 국가에서 작성된 홍보영상을 각종행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	상시
홍보책자	동사무소, 경찰서, 민간교통사업체 및 관련단체에 비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내용, 효과, 서비스 이용 방법 홍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공	"	필요시
세미나 및 행사	교통약자 관련단체와의 정기적 세미나(시행계획 설명) 교통약자 정기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자문회의 등	공무원 관련단체	1회/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내용, 효과, 서비스 이용 방법 홍보(홍보책자 비치 및 동영상 활용)	도민	필요시
사회단체	시민단체, 장애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홍보 강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관련 내용 반영		

2. 교육방안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대상자 및 교통약자 관련 사업자(시내버스, 특별교통수단,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표 5-21> 교육방안

대상수단 /시설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내용	교육주체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자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자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권 등 교통약자이동 편의시설의 개요 및 정책방향 ○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용을 위한 운영방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관련조례 ○ 보행환경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 ○ 교통약자관련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 환경)의 설치·관리의 문제 및 개선방향 ○ 교통약자관련시설 관련부서간의 협조사항 	경기도
시내버스 (저상버스 포함)	버스운전사, 버스회사 배차담당, 버스조합	4회/년 (분기별,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작동법, 배차방법 ○ 교통약자 이동행태 ○ 버스정차문화 ○ 버스운행방법 등 	버스조합에서 교육, 결과서 시에 제출시 확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담당자	4회/년 (분기별,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 장애인 인권 ○ 교통약자서비스 	지자체 담당부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담당자	1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행태 ○ 교통약자 이동관련 정책 ○ 이동편의시설 설치, 유지관리법 등 	자자체 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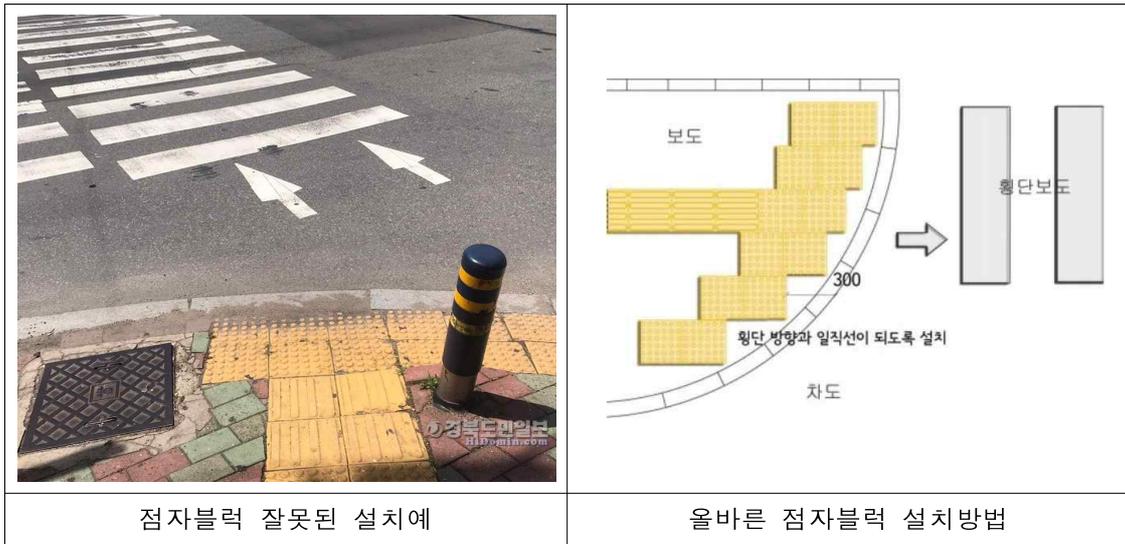
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아. 기타

1.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 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법 모색
 - 점자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
 - 교통수단의 출·도착 정보 제공
 - 문자 및 음성 안내
 - 문자 미제공시 수어화면 제공
 - 버스승차예약시스템 도입
 - 버스 정보앱이나 BIT(버스정보안내기)를 이용해 교통약자가 탑승하고자 하는 노선과 정류장을 선택하면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정류장에 교통약자가 대기 중임을 인지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돕고 무정차를 방지
 - 제주도 시범운영 중(2019.12)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특히 보행안전과 관련한 횡단보도와 점자블럭의 설치 및 관리가 중요
 - 횡단보도
 - 보행신호 음성안내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 점자블럭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 및 안내, 이동편의성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점자블럭의 올바른 설치 유도(이동편의시설 설치매뉴얼상 설치방법 상세안내 및 다양한 설치예시 제공)
 - * 횡단보도까지 올바른 유도를 위해 선형블럭의 돌출선이 횡단하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유지·관리(예시 : 안전신문고)



<그림 5-7>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 비교

□ 시각장애이용 앱 등 이동편의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 GPS 정보기반으로 목적지 선택시 해당 노선버스 도착 정보 음성 전달 앱 개발

* 구글 시각장애이용 AI 앱 'look out' 참고 :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주변 물체나 글씨를 인식하여 음성으로 알림. 사용자가 목걸이로 차고 다니거나 셔츠 앞주머니에 넣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해당 사물이나 풍경을 인식해 음성으로 정보 전달

2.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계획

-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 제약) 비휠체어 장애인은 추가적인 수단 제공없이 본인 및 동반자 할인을 통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명절 및 관광목적의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나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이용 불편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4개 노선(서울경부↔부산·강릉, 서울센트럴시티↔전주·당진) 시범운행 개시(2019.11)
 - 버스당 휠체어 2대 탑승 가능, 노선별 1일 2~3회 운행
 -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 기대
 - * 국토교통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17.04~'19.09)」 참고
 - ** KSP ISO 7176-19:2012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바퀴 장착 이동기구) 인증을 받은 휠체어만 탑승 가능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재정지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버스 도입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
 - 지원 부담율(국가:지자체) 서울 40:60, 기타(광역시·도/시·군) 50:50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 외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포함

<표 5-22> 우선면허 부여 기준

구분	현행	개정
저상버스 (시내·농어촌·마을)	운행하려는 대수의 2분의 1이상(특별·광역시) 운행하려는 대수의 3분의 1 이상(시·군)	(좌동)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고속·시외)	- (신설)	운행하려는 대수의 2분의 1이상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

-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
- *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 (경기도 방문 휠체어 장애인 관광객 이동편의 제공) 지자체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 및 여행가이드 제공

- 경기도내 시티투어버스 운영 지자체 : 18개 시·군(2018.07 기준)
 -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광명, 광주, 오산, 이천, 양주, 안성, 여주, 가평, 연천
 - 현재 휠체어 탑승장치 장착 시티투어버스 전무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여행가이드 제공(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활용)
 - 휠체어 이용자들의 여행을 위한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 안내
 - 참고사이트 : <https://wheelchairtravel.org/>
-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경유 시내노선에 저상버스 우선 배정
- 광역이동지원시스템(센터)를 통한 특별교통수단 제공



The following guides provide the core information you need to confidently travel with a wheelchair. Take an in-depth look at the accessibility of airplanes and trains, and learn what to expect when booking hotel rooms and traveling to another country.



Wheelchair Users' Guide to Accessible Air Travel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air travel with a wheelchair, from booking to baggage claim.



Wheelchair Users' Guide to Accessible Hotels

Learn about the ADA requirements for hotel room accessibility and be better prepared to find a hotel that meets your needs.



Wheelchair Users' Guide to Traveling Abroad

12 articles filled with information and tips to make you an international travel pro.



Wheelchair Users' Guide to Train Travel

Detailed information about train travel with a disa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그림 5-8> 휠체어 이용자 여행가이드 사이트 참고

VI. 투자비용산출

1. 소요비용산출
2. 자원조달방안

VI. 투자비용산출

1 소요비용산출

가. 개요

-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확충, 저상버스 도입,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소요비용산출

나. 소요비용산출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 지원기준에 따른 2020~2024년 도비 소요비용은 도입비 8,621.5백만원, 운영비 46,680백만원

<표 6-1>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 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도입	도비(50%)	8,621.5	2,537.0	1,870.5	1,440.5	1,204.0	1,569.5
	시·군비(50%)	8,621.5	2,537.0	1,870.5	1,440.5	1,204.0	1,569.5
운영	도비(10%)	46,680.0	9,048.0	9,272.0	9,360.0	9,448.0	9,552.0
	시·군비(90%)	420,120.0	81,432.0	83,448.0	84,240.0	85,032.0	85,968.0
합계		484,043.0	95,554.0	96,461.0	96,481.0	96,888.0	98,659.0
도비 합계		55,301.5	11,585.0	11,142.5	10,800.5	10,652.0	11,121.5

주1) 도입비 43백만원/대, 운영비 80백만원/대·년

주2) 도입비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10~20%, 운영비는 광역이동 만족시군에 대해 +10%

<표 6-2>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용(도비)

(단위 : 백만원)

구분	도입비용					운영비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경기도	2,537.0	1,870.5	1,440.5	1,204.0	1,569.5	90,480.0	92,720.0	93,600.0	94,480.0	95,520.0
수원시	344.0	344.0	-	-	-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고양시	-	258.0	172.0	172.0	279.5	6,880.0	6,880.0	6,880.0	6,880.0	6,880.0
용인시	-	-	-	-	-	5,760.0	5,760.0	5,760.0	5,760.0	5,760.0
성남시	-	-	-	-	-	6,400.0	6,400.0	6,400.0	6,400.0	6,400.0
부천시	107.5	193.5	451.5	430.0	215.0	5,440.0	5,840.0	6,240.0	6,640.0	6,960.0
화성시	387.0	172.0	258.0	150.5	172.0	4,640.0	4,960.0	5,280.0	5,600.0	5,920.0
안산시	-	-	258.0	-	236.5	4,880.0	4,880.0	4,880.0	4,880.0	4,880.0
남양주시	150.5	172.0	-	-	-	3,920.0	4,560.0	4,560.0	4,560.0	4,560.0
안양시	21.5	-	-	-	-	3,040.0	3,040.0	3,040.0	3,040.0	3,040.0
평택시	258.0	236.5	21.5	-	172.0	3,920.0	3,920.0	3,920.0	3,920.0	3,920.0
시흥시	43.0	-	107.5	150.5	215.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파주시	-	-	-	-	-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의정부시	279.5	64.5	-	64.5	-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김포시	258.0	-	-	-	-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광주시	107.5	107.5	-	-	-	2,720.0	3,120.0	3,120.0	3,120.0	3,120.0
광명시	43.0	-	-	-	-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군포시	86.0	43.0	86.0	107.5	43.0	1,840.0	2,000.0	2,000.0	2,000.0	2,160.0
하남시	64.5	-	-	-	-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오산시	-	-	-	-	-	1,360.0	1,360.0	1,360.0	1,360.0	1,360.0
양주시	64.5	64.5	43.0	21.5	21.5	1,760.0	1,840.0	1,920.0	2,000.0	2,080.0
이천시	-	-	-	-	-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구리시	21.5	-	-	-	-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안성시	-	-	-	-	-	1,520.0	1,520.0	1,520.0	1,520.0	1,520.0
포천시	150.5	193.5	-	64.5	64.5	1,600.0	1,760.0	1,760.0	1,760.0	1,760.0
의왕시	-	-	-	-	-	880.0	880.0	880.0	880.0	880.0
양평군	86.0	-	-	-	-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여주시	43.0	21.5	21.5	21.5	43.0	1,600.0	1,680.0	1,760.0	1,840.0	2,000.0
동두천시	21.5	-	21.5	21.5	64.5	1,120.0	1,120.0	1,120.0	1,120.0	1,120.0
가평군	-	-	-	-	-	1,280.0	1,280.0	1,280.0	1,280.0	1,280.0
과천시	-	-	-	-	-	480.0	480.0	480.0	480.0	480.0
연천군	-	-	-	-	43.0	1,040.0	1,040.0	1,040.0	1,040.0	1,040.0

□ (저상버스 도입지원) 보조금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로 2020~2024년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비 지원규모는 약 12,799.2백만원

<표 6-3> 저상버스 도입 소요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저상버스	일반	1,570	530	316	259	239	226
	중형	179	54	23	35	38	29
소요비용	국비(50%)	85,230.1	28,528.3	16,666.6	14,266.0	13,377.6	12,391.6
	도비(7.5%)	12,799.2	4,281.9	2,503.4	2,142.9	2,008.8	1,862.2
	시군비(42.5%)	72,431.9	24,246.4	14,163.2	12,123.1	11,368.8	10,529.4
	계	170,460.2	57,056.6	33,333.2	28,532.0	26,755.2	24,783.2

주1) 저상버스 보조금 일반 약 100백만원/대, 중형 약 75백만원/대

주2) 중형 저상버스에 마을버스 포함

□ (홍보 및 교육지원)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동편의시설의 편리한 이용안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

<표 6-4> 홍보 및 교육지원 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홍보 및 교육 관련책자 발간횟수	4	-	1	1	1	1
사업비	100	-	25	25	25	25

주) 홍보책자 발간 비용은 회당 25백만원 적용

<표 6-5>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 소요비용(도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경기도	12,799.2	4,281.9	2,503.4	2,142.9	2,008.8	1,862.2
수원시	1,971.7	488.0	375.0	375.0	371.3	362.4
고양시	-	-	-	-	-	-
용인시	-	-	-	-	-	-
성남시	2,863.3	1,489.3	743.0	443.0	75.0	113.0
부천시	5,037.8	1,237.5	926.8	885.5	1,057.5	930.5
화성시	32.0	-	8.0	8.0	8.0	8.0
안산시	225.0	75.0	75.0	-	-	75.0
남양주시	-	-	-	-	-	-
안양시	452.0	300.0	38.0	38.0	38.0	38.0
평택시	23.0	23.0	-	-	-	-
시흥시	227.0	75.0	38.0	38.0	38.0	38.0
파주시	183.8	183.8	-	-	-	-
의정부시	55.0	23.0	8.0	8.0	8.0	8.0
김포시	15.0	15.0	-	-	-	-
광주시	-	-	-	-	-	-
광명시	884.2	165.0	105.5	189.4	270.0	154.3
군포시	11.3	11.3	-	-	-	-
하남시	-	-	-	-	-	-
오산시	120.0	30.0	30.0	30.0	15.0	15.0
양주시	564.0	120.0	113.0	113.0	113.0	105.0
이천시	-	-	-	-	-	-
구리시	-	-	-	-	-	-
안성시	8.0	8.0	-	-	-	-
포천시	58.1	30.0	28.1	-	-	-
의왕시	-	-	-	-	-	-
양평군	-	-	-	-	-	-
여주시	68.0	8.0	15.0	15.0	15.0	15.0
동두천시	-	-	-	-	-	-
가평군	-	-	-	-	-	-
과천시	-	-	-	-	-	-
연천군	-	-	-	-	-	-

주) 저상버스 일반과 중형 모두 포함

다. 연차별 투자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종합 결과 2020~2024년 경기도 부담 비용은 약 68,200.7백만원

<표 6-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특별교통 수단	도비	55,301.5	11,585.0	11,142.5	10,800.5	10,652.0	11,121.5
	시·군비	428,741.5	83,969.0	85,318.5	85,680.5	86,236.0	87,537.5
	소계	484,043.0	95,554.0	96,461.0	96,481.0	96,888.0	98,659.0
저상버스	국비	85,230.1	28,528.3	16,666.6	14,266.0	13,377.6	12,391.6
	도비	12,799.2	4,281.9	2,503.4	2,142.9	2,008.8	1,862.2
	시·군비	72,430.9	24,246.4	14,163.2	12,123.1	11,368.8	10,529.4
	소계	170,460.2	57,056.6	33,333.2	28,532.0	26,755.2	24,783.2
홍보 및 교육 (도비)		100.0	-	25.0	25.0	25.0	25.0
합계		654,603.2	152,610.6	129,819.2	125,038.0	123,668.2	123,467.2
도비 합계		68,200.7	15,866.9	13,670.9	12,968.4	12,685.8	13,008.7

2

재원조달방안

가. 중앙정부의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조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형평성 측면의 투자이므로 일반회계 고려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재원조달) 저상버스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대중교통계정에서 국고지원 가능

나. 경기도 및 시·군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조달) 지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재원조달
-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조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 활용
 - 특별회계 세출항목(교통약자를 위한 투자사업 지원 가능)
 -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등